

I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금액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제공 지역	사업명	코드 번호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사업내용	서비스 형태	재판정 (회)	페이지
계		27개 (전국표준형 1, 시도 개발형 5, 시군구 공동개발형 14, 시군구 자체개발형 7)								
1	시군구 공동	웅진군 제외	아동정서발달서비스	030105	160~180	20~40	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순화프로그램	기관 방문형	1	18
2	사도 개발	10개 군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010105	112~144	16~48	언어/인지/놀이/미술재활프로그램 및 상담	기관 방문형	1	23
3	사도 개발	10개 군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080105	126	14	마사지, 지압 등 안마서비스	기관 방문형		30
4	시군구 공동	웅진군 제외	정신건강 토탈케어	090105	180	20	위기상황개입/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재가 방문형	2	35
5	전국표준형	웅진군 제외	장애인보조기기렌탈	070101	84~108	12~36	보조기기 렌탈 및 유지보수서비스	재가 방문형	5	40
6	시군구 공동	웅진군 제외	장애인 재활승마	200205	176~198	22~44	재활승마 및 상담	기관 방문형	1	44
7	시군구 공동	웅진군 제외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130305	112~128	32~48	비전형성교육/체험활동(4개월) 직업탐색교육/체험활동(8개월)	기관 방문형		48
8	시군구 공동	강화군 제외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200305	150~170	20~40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및 운동서비스 제공	기관 방문형		57
9	시군구 공동	웅진군 제외	노인수중운동교실	050805	110	10	건강상태 점검, 수중운동	집단 활동형		62
10	시군구 공동	강화군, 웅진군 제외	장애아동 학습지원서비스	210205	144~162	18~36	장애아동 인지 및 일상생활훈련	재가 방문형	1	66
11	사도 개발	10개 군구	성인심리상담서비스	180305	160~180	20~40	성인대상 심리상담지원	기관 방문형	1	69
12	사도 개발	10개 군구	오감쑹쑹서비스	290505	78~104	26~52	놀이지도, 미술활동, 동화구연	재가 방문형		72
13	시군구 공동	강화군, 웅진군 제외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170305	80~90	10~20	영아와 부모 대상 놀이프로그램	기관 방문형		75
14	시군구 공동	미추홀구, 웅진군 제외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그램	100205	144	16	인지건강관리를 통한 치매예방강화	기관 방문형		78
15	사도 개발	10개 군구	나를 찾는 5060	190205	112~144	16~48	중장년층 대상 악기교육 및 정서지원프로그램	기관 방문형		81
16	시군구 자체	웅진군	섬마을 행복나눔서비스	290105	180~200	20~40	클래식 악기교육, 가족정서프로그램	집단 활동형	1	84
17	시군구 자체	미추홀구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100105	126	14	노인정서지원, 분야별서비스 제공	재가+기관 방문형		88
18	시군구 공동	웅진군, 강화군	도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예술교육	170205	90	10	영아와 부모 대상 놀이프로그램	집단/기관 방문형		92
19	시군구 공동	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즐거움 아침, 행복한 학교	130205	120~135	15~30	아침영양제공 및 신체활동서비스, 부모교육 및 상담	집단 활동형		96
20	시군구 공동	웅진군, 강화군	도서지역어르신 삶의 질 향를 증진서비스	190105	140	10	심리지원서비스, 여가프로그램, 건강관리	기관 방문형		99
21	시군구 공동	중구, 동구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	290605	104~117	13~26	표현·기획능력향상 및 정서발달지원	기관 방문형		102
22	시군구 공동	웅진군, 강화군	섬마을 꼬마작가서비스	290705	120~135	15~30	표현·기획능력향상 및 정서발달지원	기관 방문형		106
23	시군구 자체	미추홀구	좋은부모를 위한 육아토달케어서비스	170705	180	20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대한 심리상담, 올바른 육아방법 코칭	재가+기관 방문형		109

연번	구분	제공 지역	사 업 명	코드 번호	정 부 지원금	본 인 부담금	사 업 내 용	서비스 형태	재판정 (회)	페이지
24	사군구 자체	부평구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	210305	112~144	16~48	발달지연아동 대상 집단 사회성증진프로그램	기관 방문형		113
-	사군구 자체	동구	[7월 폐지] 정리수납 멘토링 지원 서비스	240305	84~108	12~36	공간활용법 및 정리수납법 교육	재가 방문형		
25	사군구 자체	남동구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프로그램	210405	160~180	20~40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집단 사회성프로그램	기관 방문형		117
26	사군구 자체	계양구	어르신 관절건강지킴 프로그램	200405	108	12	맨손 또는 기구를 활용한 관절건강 기능향상 운동프로그램	기관 방문형		120
27	사군구 자체	동구	[8월 신규] 필이 통하는 놀이혁신으로 아동의 행복찾기	-	180	20	학교연계형 전래전통놀이활동 / 지역연계형 숲놀이활동	집단 활동형		123

II

사업별 세부 매뉴얼 [제공기관 필수 준수사항]

1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0301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② 서비스 대상	<p>소득 및 연령</p> <p>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8세(2012년생)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2008년생) (*연령 : 2008.01.01.~2012.12.31.)</p>
	<p>선정기준</p> <p>다음 ①,②,③,④,⑤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p> <p>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②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③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 (추가)</p> <p>④ 6개월 이내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학교장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안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서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 (삭제)</p> <p>④ 6개월 이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⑤ 6개월 이내에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청소년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p> <p>☞ ④, ⑤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p>★우선 순위 (2020년 변경)</p> <p>1.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정서발달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p>
	<p>중복제한</p> <p>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p> <p>유의사항</p> <p>□ 자격기본법에 의한 방과후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p> <p>□ 소견서 또는 추천서 발급 시,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p> <p>□ 병원 진료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항 목	내 용				
<p>③ 이용자신청 구비서류</p>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⑥-1.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 자격증 사본 ⑥-2.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 자격증 사본 ⑥-3.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 자격증 사본 (추가) ⑥-3.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학교장(“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학교장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장) 추천서 (삭제) ⑥-4.우선 선정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⑥-5.우선 선정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추천공문 → 2020년 추가 → ⑥-1~⑥-5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 ※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p>				
<p>④ 제공기관 및 인력</p>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58 1005 1448 1320"> <tr> <td data-bbox="358 1005 532 1320">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td> <td data-bbox="532 1005 1448 1320">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별도 면적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총 33㎡이상의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2가지 이상 악기 구비 (이용자 모집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 구비 필수)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58 1343 1448 1997"> <tr> <td data-bbox="358 1343 532 1997">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td> <td data-bbox="532 1343 1448 1997"> <p>○ 사전사후검사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p> <p>②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p> <p>③강화군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강화군만 해당):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p> <p>※모든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 및 민간자격과 연관된 내용으로써,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별도 면적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총 33㎡이상의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2가지 이상 악기 구비 (이용자 모집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 구비 필수)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p>○ 사전사후검사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p> <p>②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p> <p>③강화군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강화군만 해당):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p> <p>※모든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 및 민간자격과 연관된 내용으로써,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별도 면적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총 33㎡이상의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2가지 이상 악기 구비 (이용자 모집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 구비 필수)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p>○ 사전사후검사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p> <p>②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p> <p>③강화군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강화군만 해당):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p> <p>※모든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 및 민간자격과 연관된 내용으로써,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항 목	내 용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58 339 532 631">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td> <td data-bbox="532 339 1442 631"> <p>○ 클래식(음악)교육 제공인력 -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2가지 이상 제공가능하도록 제공인력을 채용해야 함.</p> <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p> <p>※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p> </td> </tr> </table>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p>○ 클래식(음악)교육 제공인력 -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2가지 이상 제공가능하도록 제공인력을 채용해야 함.</p> <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p> <p>※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p>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p>○ 클래식(음악)교육 제공인력 -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2가지 이상 제공가능하도록 제공인력을 채용해야 함.</p> <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p> <p>※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p>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58 645 495 1120" rowspan="2"> 서비스 가격 </td> <td colspan="2" data-bbox="495 645 1442 707"> ▶ 월 20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 </td> </tr> <tr> <td data-bbox="495 707 1040 890">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505 707 667 799">구분</th> <th data-bbox="667 707 1040 799">(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 data-bbox="1040 707 1442 799">(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05 799 667 844">정부지원금</td> <td data-bbox="667 799 1040 844">180,000원(90%)</td> <td data-bbox="1040 799 1442 844">160,000원(80%)</td> </tr> <tr> <td data-bbox="505 844 667 890">본인부담금</td> <td data-bbox="667 844 1040 890">20,000원(10%)</td> <td data-bbox="1040 844 1442 890">40,000원(20%)</td> </tr> </tbody> </table> </td> <td data-bbox="1040 707 1442 890"></td> </tr> <tr> <td data-bbox="358 890 495 1120"></td> <td colspan="2" data-bbox="495 890 1442 1035">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2,500원 / 2등급:20,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2,500원 / 2등급:5,000원씩 산정 </td> </tr> <tr> <td data-bbox="358 1035 495 1120"> 이용자별 제공기간 </td> <td colspan="2" data-bbox="495 1035 1442 1120">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td> </tr> </table>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505 707 667 799">구분</th> <th data-bbox="667 707 1040 799">(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 data-bbox="1040 707 1442 799">(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05 799 667 844">정부지원금</td> <td data-bbox="667 799 1040 844">180,000원(90%)</td> <td data-bbox="1040 799 1442 844">160,000원(80%)</td> </tr> <tr> <td data-bbox="505 844 667 890">본인부담금</td> <td data-bbox="667 844 1040 890">20,000원(10%)</td> <td data-bbox="1040 844 1442 890">40,000원(20%)</td> </tr> </tbody> </table>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2,500원 / 2등급:20,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2,500원 / 2등급:5,0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505 707 667 799">구분</th> <th data-bbox="667 707 1040 799">(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 data-bbox="1040 707 1442 799">(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05 799 667 844">정부지원금</td> <td data-bbox="667 799 1040 844">180,000원(90%)</td> <td data-bbox="1040 799 1442 844">160,000원(80%)</td> </tr> <tr> <td data-bbox="505 844 667 890">본인부담금</td> <td data-bbox="667 844 1040 890">20,000원(10%)</td> <td data-bbox="1040 844 1442 890">40,000원(20%)</td> </tr> </tbody> </table>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2,500원 / 2등급:20,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2,500원 / 2등급:5,0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58 1173 418 1235">구분</th> <th data-bbox="418 1173 1255 1235">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55 1173 1442 1235">서비스횟수/ 집단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8 1235 418 1678" rowspan="3"> 기본 서비스 </td> <td data-bbox="418 1235 732 1356"> 사전사후검사 </td> <td data-bbox="732 1235 1255 1356">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td> <td data-bbox="1255 1235 1442 1356"> 연 2회 ***1:1실시 </td> </tr> <tr> <td data-bbox="418 1356 732 1501"> 클래식(음악) 이론 및 실기 </td> <td data-bbox="732 1356 1255 1501">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최소 월 1회 이상은 참여 아동 합주를 실시 </td> <td data-bbox="1255 1356 1442 1501"> 주 1회 (회당 60분) ***1:30이하 </td> </tr> <tr> <td data-bbox="418 1501 732 1678"> 정서순화프로그램 </td> <td data-bbox="732 1501 1255 1678">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 상담일지 별도첨부 </td> <td data-bbox="1255 1501 1442 1678"> 주 1회 (회당 60분) ***1:30이하 </td> </tr> <tr> <td data-bbox="358 1678 418 2048"></td> <td colspan="2" data-bbox="418 1678 1255 1969"> 1. 일반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 입장권, 사진, 참석자명단 등 별도첨부 ※ 다수의 제공인력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관람하는 활동 인정불가함에 유의 (외부연주회 관람) 2.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 사진, 참석자명단 등 별도첨부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3.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 (1개월 서비스 참여 후, 대여 가능) 4. 이용자별 사례회의 및 보호자에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월 1회) </td> <td data-bbox="1255 1678 1442 2048"> ※ 1~4 모두 시행해야하며, 제공기록 기록 및 별도 증빙서류관리 필수 ※ 현장점검 확인대상 (바우처 결제불가) </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집단규모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1:1실시	클래식(음악) 이론 및 실기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택 1 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최소 월 1회 이상은 참여 아동 합주를 실시	주 1회 (회당 60분) ***1:30이하	정서순화프로그램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 상담일지 별도첨부	주 1회 (회당 60분) ***1:30이하		1. 일반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 입장권, 사진, 참석자명단 등 별도첨부 ※ 다수의 제공인력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관람하는 활동 인정불가함에 유의 (외부연주회 관람) 2.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 사진, 참석자명단 등 별도첨부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3.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 (1개월 서비스 참여 후, 대여 가능) 4. 이용자별 사례회의 및 보호자에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월 1회)		※ 1~4 모두 시행해야하며, 제공기록 기록 및 별도 증빙서류관리 필수 ※ 현장점검 확인대상 (바우처 결제불가)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집단규모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1:1실시																		
	클래식(음악) 이론 및 실기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택 1 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최소 월 1회 이상은 참여 아동 합주를 실시	주 1회 (회당 60분) ***1:30이하																		
	정서순화프로그램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 상담일지 별도첨부	주 1회 (회당 60분) ***1:30이하																		
	1. 일반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 입장권, 사진, 참석자명단 등 별도첨부 ※ 다수의 제공인력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관람하는 활동 인정불가함에 유의 (외부연주회 관람) 2.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 사진, 참석자명단 등 별도첨부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3.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 (1개월 서비스 참여 후, 대여 가능) 4. 이용자별 사례회의 및 보호자에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월 1회)		※ 1~4 모두 시행해야하며, 제공기록 기록 및 별도 증빙서류관리 필수 ※ 현장점검 확인대상 (바우처 결제불가)																		

항 목	내 용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검사 의무 실시) ③ 3단계 : 클래식 이론 및 악기, 정서순화프로그램, 연주회, 음악회 등 기본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인력과 음악 프로그램 제공인력 간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안내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 및 종결(종료 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⑦ 서비스 실지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p> <p>-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추가확보시설 활용불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 제공장소가 될 수 없음. (미 준수시 행정처분)</p> <p>※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中</p> <p>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은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이나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p> <p>※ 「2020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中</p> <p>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또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시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바우처 결제 시 환수) ➡ 2020년 추가사항</p> </div> <p>○ 서비스 집단규모 1:3이하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3명 이내로 진행)</p> <p>※ 사전사후검사는 1:1로 진행해야 함에 유의</p> <p>○ 사전·사후 검사 (집단규모 1:1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검사도구 : 아동의 심리·성격, 정서 순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하여 실시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2회기(120분) 중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 주 2회기(120분) 중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60분이상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p>○ 클래식(음악) 이론 및 실기, 정서순화 프로그램 외에 기본서비스 내 프로그램 모두 실시해야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일반연주회(외부) 관람, 향상음악회 참여 </td> <td style="padding: 5px;"> -반기별 1회씩 실시 -참석자 명단, 사진, 입장권 등 별도 구비 </td> </tr> </table>	일반연주회(외부) 관람,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씩 실시 -참석자 명단, 사진, 입장권 등 별도 구비
일반연주회(외부) 관람,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씩 실시 -참석자 명단, 사진, 입장권 등 별도 구비		

항 목	내 용				
	<table border="1" data-bbox="386 335 1433 477"> <tr> <td data-bbox="386 335 824 397">무상악기 대여, 참여 아동 합주</td> <td data-bbox="824 335 1433 397">제공기록지에 기록</td> </tr> <tr> <td data-bbox="386 397 824 477">월 사례회의 및 서비스 제공보고서 배부</td> <td data-bbox="824 397 1433 477">-매월 제공인력 간 사례회의 실시 후 작성 -1부는 보호자에 제공, 1부는 이용자 파일에 보관</td> </tr> </table> <p>☞ 모든 내용은 현장점검 시, 확인 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정서순화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을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 / 방법 자율) <p>○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p>	무상악기 대여, 참여 아동 합주	제공기록지에 기록	월 사례회의 및 서비스 제공보고서 배부	-매월 제공인력 간 사례회의 실시 후 작성 -1부는 보호자에 제공, 1부는 이용자 파일에 보관
무상악기 대여, 참여 아동 합주	제공기록지에 기록				
월 사례회의 및 서비스 제공보고서 배부	-매월 제공인력 간 사례회의 실시 후 작성 -1부는 보호자에 제공, 1부는 이용자 파일에 보관				
<p>⑨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 ○ 제공기관 등록 시, 정서순화 및 음악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바이올린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 플룻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 정서순화프로그램 매뉴얼 1부</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도 개발) / 사업코드 0101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아동청소년 심리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긍정적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p>소득 및 연령</p> <p>선정기준</p>	<p>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이하(2002년생) 아동 (*연령 : 2002.01.01.~)</p> <p>다음 ①~⑧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p> <p>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②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③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추가)</p> <p>④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⑤ 6개월 이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⑥ 6개월 이내에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와 직접 실시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를 자율 선택하여 추천서를 발급한 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p> <p>⑦ [언어재활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2019년 추가 / ①~⑦ 중 발급가능한 것으로 선택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p> <p>★⑧ 6개월 이내에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청소년 (※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p> <p>☞ ⑤, ⑧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p>★우선 순위 (2020년 변경)</p> <p>1.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p>

항 목	내 용				
② 서비스 대상	중복제한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부평구),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참좋은카드(삭제) ,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심층검사 및 진료비 지원사업(인천시 교육청) → 2020년 추가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자격기본법에 의한 방과후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참좋은카드 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본 사업 중도포기 서식 활용하여 해당 접수처에 제출 (사업별서식 제32호 / 2019년 추가) (삭제)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9 936 862 1081">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862 936 1446 1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d> </tr> <tr> <td data-bbox="349 1081 862 1120">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td> <td data-bbox="862 1081 1446 1120">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td> </tr> </table>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⑤-1.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⑤-2.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⑤-3.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추가) ⑤-4.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⑤-5. [우선 선정]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6. 문제행동위험군과 관련하여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6개월이내 발급받은 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도구 결과서 함께 제출(다음 중 택1하여 제출)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⑤-7.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언어재활 희망 신청자에 한함) ⑤-8. [우선 선정]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추천공문 → 2020년 추가 ➔ ⑤-1~⑤-8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 ※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					

항 목	내 용
-----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언어, 인지, 미술재활프로그램 중 3가지 이상 제공가능한 환경 조성 (전용공간 및 기타 교구 등)
---------------------------------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제공인력 기준 (제공하고자 하는 3가지 이상의 세부프로그램에 맞추어 충족)	<p>○ 놀이프로그램 담당 제공인력 자격기준 : ①, ②, ③ 중 택 1</p> <p>①다음 중 한 가지 자격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p>②놀이·음악재활,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놀이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③놀이·음악재활, 심리, 상담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놀이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놀이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놀이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개월 이상
	<p>○ 인지프로그램 담당 제공인력 자격기준 : ①, ②, ③ 중 택 1</p> <p>①다음 중 한 가지 자격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p>②인지·행동재활,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③인지·행동재활, 심리, 상담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개월 이상

(다음페이지 계속)

항 목	내 용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제공인력 기준 (제공하고자 하는 3가지 이상의 세부프로그램에 맞추어 충족)</p> <p>○ 언어프로그램 담당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를 취득한 자</p> <p>○ 미술프로그램 담당 제공인력 자격기준 : ①, ②, ③ 중 택 1</p> <p>①다음 중 한 가지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p> <p>②미술재활,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③미술재활, 심리, 상담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개월 이상</p> <p>○ 심리운동프로그램 담당 제공인력 자격기준 : ①, ②, ③ 중 택 1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중 3개 프로그램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제공기관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실시가능</p> <p>①다음 중 한 가지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p> <p>②심리운동,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운동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③심리운동, 심리, 상담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운동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운동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운동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개월 이상</p>
	<p>※위 자격기준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 및 민간자격과 연관된 내용으로써,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항 목	내 용			
⑤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월 16만원 (정부지원 70~90% / 본인부담 10~3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36,000원 / 2등급:32,000원 / 3등급:28,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4,000원 / 2등급:8,000원씩 / 3등급:12,0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⑥ 서비스내용 및 제공절차	사전·사후검사	▷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심리상담 서비스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부득이하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50분 제공해야 함.	주1회씩 월4회 (회당 10분내외)			
	기본 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와 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병행하여 회당 50분이상 진행)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및 상담을 통해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여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상담일지 별도 작성) ▷ 놀이프로그램 : 모래놀이, 음악놀이 등을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하고 증상별 재활계획을 수립 및 제공하여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학습지 활용X)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심리운동 프로그램 : 운동을 통한 심리재활프로그램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중 3개 프로그램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제공기관에 한하여 실시가능(단순 체육활동, 운동지도 불가) ※심리운동프로그램 실시 사유 증빙자료 보관(보호자확인서 등)	주1회씩 월4회 (회당40분)		
			종합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바우처 결제불가)	선택적 제공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바우처 결제불가)	필요시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바우처 결제불가)	수시				

항 목	내 용
⑥ 서비스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검사 의무 실시)</p> <p>②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또는 혼합하여 서비스 제공</p> <p>③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종료 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p>
⑦ 서비스 실시지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추가확보시설 활용불가) <p>○ 서비스 집단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단, 서비스 종료 1개월 전에 한하여 종료일이 동일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1:3 이하 집단 프로그램 제공가능 <p>○ 사전·사후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일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검사도구 : 아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하여 실시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 <p>○ 인지프로그램 제공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p>○ 심리운동 프로그램 제공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체육활동, 운동지도 서비스 실시 불가 - 심리운동 프로그램 실시 사유 증빙자료 보관 (보호자 확인서 등) - 심리운동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의 개선 정도를 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록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p>⑥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대인/대물 보상) -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 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 ○ 제공기관 등록 시, 세 가지 이상의 세부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u>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u>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놀이/언어/미술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계획한 경우, 세 가지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매뉴얼 1부씩 제출</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0801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②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기준	<p>다음 ①,②,③,④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p> <p>①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1960년생) 이상인 자 (*연령:~1960.12.31.)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p> <p>②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기준 없음)</p> <p>③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연령기준 없음)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p> <p>★④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p> <p>☞ ④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2019년 추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1965년생) 이상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항 목	내 용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 카드신청 관련사항은 카드사에 별도 문의</p> <table border="1" data-bbox="332 477 1474 805"> <tr> <td data-bbox="332 477 824 576">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①, ④에 해당하는 경우 </td> <td data-bbox="824 477 1474 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td> </tr> <tr> <td data-bbox="332 576 824 805">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td> <td data-bbox="824 576 1474 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만19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td> </tr> </table>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①, ④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만19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①, ④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만19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⑤소득기준에 부합한 경우, 다음 ㉠,㉡,㉢ 중 해당사항에 맞추어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및 선정기준' ①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연령 및 선정기준' ②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증(지체 또는 뇌병변) ㉢ '연령 및 선정기준' ③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우선 선정] '연령 및 선정기준' ④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 → 2020년 추가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32 1311 1414 1953"> <tr> <td data-bbox="332 1311 511 1953" rowspan="2">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td> <td data-bbox="511 1311 1414 1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개설신고가 완료된 기관 </td> </tr> <tr> <td data-bbox="511 1379 1414 1953">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안마 제공장소)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p>★★★[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p> <p>제공기관이 등록된 군구와 동일한 소재의 경로당, 복지관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활용가능</p> <p>단, 기존 이용자 중 2019년 10월에 개시한 이용자까지만 소재지와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가능(변경 전 방식과 동일) → 2020년 변경</p> <p>*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특히 제5호, 퇴폐·음란·도박 관련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이어야 함</p>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32 1976 1414 2036"> <tr> <td data-bbox="332 1976 597 2036"> 제공인력 기준 </td> <td data-bbox="597 1976 1414 2036">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개설신고가 완료된 기관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안마 제공장소)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p>★★★[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p> <p>제공기관이 등록된 군구와 동일한 소재의 경로당, 복지관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활용가능</p> <p>단, 기존 이용자 중 2019년 10월에 개시한 이용자까지만 소재지와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가능(변경 전 방식과 동일) → 2020년 변경</p> <p>*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특히 제5호, 퇴폐·음란·도박 관련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이어야 함</p>	제공인력 기준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개설신고가 완료된 기관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안마 제공장소)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p>★★★[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p> <p>제공기관이 등록된 군구와 동일한 소재의 경로당, 복지관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활용가능</p> <p>단, 기존 이용자 중 2019년 10월에 개시한 이용자까지만 소재지와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가능(변경 전 방식과 동일) → 2020년 변경</p> <p>*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특히 제5호, 퇴폐·음란·도박 관련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이어야 함</p>				
제공인력 기준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항 목	내 용																							
⑤ 서비스 가격/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p>▶ 월 14만원 [정부지원금] 126,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31,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3,500원씩 산정</p>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⑥ 서비스 실시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⑦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p>○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p> <table border="1" data-bbox="321 966 1406 1226">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4">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노 인</td> <td>· 전신안마 · 운동요법</td> <td>· 마사지 · 자극요법</td> <td>· 지압</td> <td>· 발마사지</td> <td rowspan="3">주 1회 (회당 60분)</td> </tr> <tr> <td>장애인</td> <td>· 전신안마 · 운동요법</td> <td>· 마사지 · 체형교정</td> <td>· 지압 · 자극요법</td> <td>· 발마사지</td> </tr> <tr> <td>기타 질환자 (특화사업)</td> <td>· 전신안마 · 운동요법</td> <td>· 마사지 · 체형교정</td> <td>· 지압 · 자극요법</td> <td>· 발마사지</td> </tr> </tbody> </table> <p>※ 단,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 침술 불가</p>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신청자의 증상·욕구조사 (이용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초기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필수) ➔ 사업별서식 제3호 활용</p> <p>②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p> <p>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p>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 인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자극요법	· 지압	· 발마사지	주 1회 (회당 60분)	장애인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체형교정	· 지압 · 자극요법	· 발마사지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체형교정	· 지압 · 자극요법	· 발마사지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 인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자극요법	· 지압	· 발마사지	주 1회 (회당 60분)																			
장애인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체형교정	· 지압 · 자극요법	· 발마사지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체형교정	· 지압 · 자극요법	· 발마사지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집단규모 1:1 서비스 실시가 원칙이며, 안마사 1인당 주 40시간이하 제공가능 (2017년 8월부터 적용)</p> <p>○ 제공장소와 관련하여 제공인력별 월 근무현황표(사업별서식 제24호)를 익월 첫째주까지 등록 군구에 제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예) 홍길동 제공인력의 5월 근무현황표를 6월 첫째주까지 등록 군구에 제출</div>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항 목	내 용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이 등록된 군구와 동일한 소재의 경로당, 복지관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활용가능(미 준수시 행정처분) <p>단, 기존 이용자 중 2019년 10월에 개시한 이용자까지만 소재지와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가능(변경 전 방식과 동일) → 2020년 변경</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예시1] 미추홀구 제공기관이 남동구에 소재한 A경로당을 추가확보시설로 활용 중에 있다. 2020년부터 추가확보시설 규정이 변경되나, A경로당의 이용자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이므로 잔여기간만큼 기존대로 A경로당에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잔여기간 종료 이후에는 해당 경로당은 더 이상 추가확보시설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예시2] 연수구 제공기관이 동구에 소재한 B경로당을 추가확보시설로 활용 중에 있다. 2020년부터 추가확보시설 규정이 변경되었고, B경로당의 이용자는 2019년 1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 이상 B경로당에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찾아와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확보시설 추가 신고 시에는 ‘사회서비스제공자 시설확보현황 변경신청서(사업별서식 제 20호)’와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를 모두 제출해야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시설이용확인서 작성내용]</p> <p>▷필수 명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 </div> <p>※ 이용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거동 불편 사실이 확인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재가방문형 허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재가방문형 제공 이용자 관련 제공기관이 구비해야하는 서류]</p> <p>▷ 거동이 불편한 장애, 뇌병변 장애인 → <u>장애인등록증 사본</u>을 이용자 관리파일에 구비</p> <p>▷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거동불편 사실이 확인가능한 자 → 거동불편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u>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u></p> </div> <p>※ 이용자와의 계약 및 초기상담 단계에서 증빙자료를 전달받아 파일에 보관</p> <p>○ 결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항 목	내 용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 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⑨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등록 :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 별도 제출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대인/대물 보상) ※ 계약자의 특성으로 인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화재보험만으로 예외적 인정 ○ 해당 사업 등록 희망 제공기관은 별도로 연간매뉴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0901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 기준 (2020년 변경)	<p>다음 ①,②,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p> <p>★① 만 65세이상이면서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연령:~1955.12.31.) ※ 만 65세이상의 경우, 정신장애인 이외에 신청불가함.</p> <p>★② 만 64세이하면서 정신장애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가 제출가능한 자 (*연령:1956.01.01.~)</p> <p>★③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p> <p>☞ ③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p>※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p>	
	중복제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2019년 추가)	
	유의사항	<p>□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한 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신청가능</p> <p>□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항 목	내 용						
<p>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p>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391 489 1468 863"> <tr> <td data-bbox="391 489 833 638">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833 489 1468 6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d> </tr> <tr> <td data-bbox="391 638 833 753">신청자가 만14세이상~ 만19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833 638 1468 753">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td> </tr> <tr> <td data-bbox="391 753 833 863">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td> <td data-bbox="833 753 1468 863">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td> </tr> </table> <p>⑤소득기준이 부합한 경우, 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⑤-1.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정신장애) ⑤-2 장애인등록증(정신장애) 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⑤-3. [우선 선정]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 → 2020년 추가</p>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 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 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p>④ 제공기관 및 인력</p>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91 1166 1479 1386"> <tr> <td data-bbox="391 1166 565 1386">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td> <td data-bbox="565 1166 1479 1386"> <p>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91 1409 1479 1694"> <tr> <td data-bbox="391 1409 565 1694"> <p>제공인력 기준</p> </td> <td data-bbox="565 1409 1479 1694"> <p>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제공기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월사례회의 시 슈퍼바이저 자격으로 월 1회만 초빙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점검 시 확인사항)</p> <p>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p> </td> </tr> </table>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p>제공인력 기준</p>	<p>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제공기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월사례회의 시 슈퍼바이저 자격으로 월 1회만 초빙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점검 시 확인사항)</p> <p>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p>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p>제공인력 기준</p>	<p>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제공기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월사례회의 시 슈퍼바이저 자격으로 월 1회만 초빙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점검 시 확인사항)</p> <p>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p>						
<p>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p>	<table border="1" data-bbox="391 1731 1468 2038"> <tr> <td data-bbox="391 1731 529 1960"> <p>서비스 가격</p> </td> <td data-bbox="529 1731 1468 1960"> <p>▶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8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45,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5,000원씩 산정</p> </td> </tr> <tr> <td data-bbox="391 1960 529 2038"> <p>이용자별 제공기간</p> </td> <td data-bbox="529 1960 1468 2038"> <p>12개월(2회 재판정 가능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p> </td> </tr> </table>	<p>서비스 가격</p>	<p>▶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8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45,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5,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p>	<p>12개월(2회 재판정 가능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p>		
<p>서비스 가격</p>	<p>▶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8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45,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5,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p>	<p>12개월(2회 재판정 가능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p>						

항 목	내 용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p>○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p>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사전·사후검사 및 상담	<p>▷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도구 2종 이상 실시 (우울척도 등)</p> <p>▷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p> <p>➔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연 2회
	기본 서비스	증상에 따른 개입서비스	<p>※사전·사후 검사 및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p> <p>▷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p> <p>▷ 증상관리(약물관리) : 증상악화·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된 약물 관리 지원,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 및 역할·과제 부여를 통한 증상완화 지원</p> <p>▷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p> <p>▷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p> <p>➔ 상담일지 별도첨부</p>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이상)
	<p>(바우처 결제불가)</p> <p>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p> <p>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p>			선택적 제공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 (시작 시 사전검사 2종 이상 의무 실시)</p> <p>②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개입서비스를 선별·혼합하여 제공</p> <p>③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이용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 (종료시 사후검사 2종 이상 의무 실시)</p>			
⑦ 서비스 실시지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항 목	내 용
⑧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집단 규모 1:1 (제공인력 1명당 1명의 이용자에 서비스 제공) ○ 사전·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검사도구 : 우울척도 검사 등 <u>2종 이상</u> 실시 - <u>검사와 함께 이용자의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u> - 제공기관에서 <u>직접</u>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u>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u>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u>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등은 <u>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u> ○ 특히 이용자 개별 관리에 유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초기상담, 욕구사정 결과 및 자원 동원 계획, 개인별 연간/월간 서비스 계획 작성·관리 철저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u>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u>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및 활용 : <u>정신건강전문요원의 1명 이상 채용 또는 월 1회 이상 초빙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이상의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제공인력 교육 등 필수 진행</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u>근로계약 체결 필수</u> -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제공 ➔ 사례회의 내용 및 대상자별 슈퍼비전 내용 <u>별도 관리</u> -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제공 ➔ 제공인력 교육일지 등으로 교육내용 <u>별도 관리</u> (교육이수시간에는 산정되지 않음)

항 목	내 용
⑧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세부 개입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5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형) / 사업코드 070101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장애아동의 보조기기, 자세유지도구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 장애아동의 신체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소득, 연령,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	없음						
	연령	만 24세(1996년생) 이하 장애인 (*연령:1996.01.01.~)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선정기준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근디스트로피/muscular dystrophy)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뇌병변)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로 인정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394 1409 1471 1678"> <tr> <td data-bbox="394 1409 894 1579">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894 1409 1471 15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d> </tr> <tr> <td data-bbox="394 1579 894 1632">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894 1579 1471 1632">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td> </tr> <tr> <td data-bbox="394 1632 894 1678">신청자가 만19세이상~만24세이하인 경우</td> <td data-bbox="894 1632 1471 1678">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td> </tr> </table> <p>⑤-1.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 : 장애인등록증(지체/뇌병변) ⑤-2. 척수장애 또는 근이영양증(근디스트로피/muscular dystrophy)을 가진 아동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척수장애 또는 근이영양증에 대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⑤-1과 ⑤-2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p> <p>※예외 경우 인정에 따른 필요서류(만 6세 미만이면서 지체·뇌병변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지체·뇌병변장애 예견에 대한 의사진단서 ※예외 경우 인정에 따른 필요서류2(정신적 장애이면서 지체/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 지체/뇌병변)</p>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만24세이하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만24세이하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항 목	내 용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97 415 1477 622"> <tr> <td data-bbox="397 415 570 622">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70 415 1477 622">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97 649 1477 1437"> <tr> <td data-bbox="397 649 570 1437">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70 649 1477 1437"> <p>다음 ①~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p>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p> <p>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의한 의지·보조기 기사</p> <p>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p> <p>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p> <p>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p>다음 ①~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p>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p> <p>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의한 의지·보조기 기사</p> <p>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p> <p>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p> <p>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p>다음 ①~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p>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p> <p>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의한 의지·보조기 기사</p> <p>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p> <p>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p> <p>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p>▶ 월 12만원 (정부지원 70~90% / 본인부담 10~30%)</p> <table border="1" data-bbox="548 1510 1446 1708">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h>(3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08,000원(90%)</td> <td>96,000원(80%)</td> <td>84,000원(7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2,000원(10%)</td> <td>24,000원(20%)</td> <td>36,000원(30%)</td> </tr> </tbody> </table> <p>▶ 바우처 : 반기분 생성</p> <p>▶ 장애아동이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p> <table border="1" data-bbox="397 1862 1466 1969"> <tr> <td>이용자별 제공기간</td> <td>12개월 (5회 재판정 가능 / 최대 72개월까지 지원 - 2019년 확대적용) ※ 생애 한번 이용 가능</td> </tr> </table>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	정부지원금	108,000원(90%)	96,000원(80%)	84,000원(70%)	본인부담금	12,000원(10%)	24,000원(20%)	36,000원(30%)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5회 재판정 가능 / 최대 72개월까지 지원 - 2019년 확대적용) ※ 생애 한번 이용 가능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												
정부지원금	108,000원(90%)	96,000원(80%)	84,000원(70%)												
본인부담금	12,000원(10%)	24,000원(20%)	36,000원(30%)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5회 재판정 가능 / 최대 72개월까지 지원 - 2019년 확대적용) ※ 생애 한번 이용 가능														

항 목	내 용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86 374 1474 725"> <thead> <tr> <th data-bbox="386 374 532 408">구분</th> <th data-bbox="532 374 1263 408">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63 374 1474 408">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86 408 532 557">보조기기 렌탈서비스</td> <td data-bbox="532 408 1263 557"> <p>1. 보조기기 및 자세유지도구 등 맞춤형 렌탈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조기기 렌탈 * 렌탈품목 : 이너, 카시트, 자전거, 목욕의자, 스탠더 등 </td> <td data-bbox="1263 408 1474 557">12개월</td> </tr> <tr> <td data-bbox="386 557 532 725"></td> <td data-bbox="532 557 1263 725"> <p>2.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맞춤보정 등 (반기별 최소1회 이상) - 수시점검 :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정기점검 이외의 점검 </td> <td data-bbox="1263 557 1474 725"> <p>정기점검 (연 2회 이상)</p> <p>수시점검 (제한없음)</p> </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자의 증상·육구조사 (이용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초기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필수) ➔ 사업별서식 제3호 활용 ○ 2단계 :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물품인도확인서 작성)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 및 회수 등 서비스 제공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p>1. 보조기기 및 자세유지도구 등 맞춤형 렌탈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조기기 렌탈 * 렌탈품목 : 이너, 카시트, 자전거, 목욕의자, 스탠더 등 	12개월		<p>2.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맞춤보정 등 (반기별 최소1회 이상) - 수시점검 :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정기점검 이외의 점검 	<p>정기점검 (연 2회 이상)</p> <p>수시점검 (제한없음)</p>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p>1. 보조기기 및 자세유지도구 등 맞춤형 렌탈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조기기 렌탈 * 렌탈품목 : 이너, 카시트, 자전거, 목욕의자, 스탠더 등 	12개월								
	<p>2.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맞춤보정 등 (반기별 최소1회 이상) - 수시점검 :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정기점검 이외의 점검 	<p>정기점검 (연 2회 이상)</p> <p>수시점검 (제한없음)</p>								
⑦ 서비스 실시지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p>※ 타 시도 제공기관 이용 가능</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형태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집단규모 1:1 ○ 반드시 1년 단위로 계약하여야 하며, 1년 단위 소요가능금액으로 렌탈이 가능해야 함. - 등록기관은 등록조건 및 준수사항을 준용하여 서비스 운영 ○ 초기 단계에 이용자에게 렌탈가능한 목록 및 제품인도 소요시간 고지할 것 ➔ 물품인도확인서 필수 작성 ○ 사전·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는 서비스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전·사후검사'를 '초기상담기록지'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이용자의 상태 및 육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인정 ○ 이용자 상담 및 보조기기 점검 관련 초기상담기록지, 제공계약서, 제공기록지 등 작성 철저 (사업별서식 제3-1호, 제3-2호,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계약 시 보조기기 종류, 명칭, 가격 기록(가격 대비 종료월 관리) - 제공기록지 : 보조기기 납품(대상자 수령), AS, 특이사항 상세히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정기수시점검 별지 작성 - 초기상담기록지 : 이용자 육구사정, 기본정보,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상세히 기록 -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점검 및 유지보수서비스 제공 									

항 목	내 용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이용자가 보조기기를 수령한 후, 정부지원금 결제 (선결제 불가) → 반기별 결제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⑨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

⑥ 장애인 재활승마 서비스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2002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재활승마를 통해 자세교정 및 균형감각을 향상, 자발적인 행동 증가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성을 향상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58 466 505 546">소득</td> <td data-bbox="505 466 1442 546">기준중위소득 140% 이하</td> </tr> <tr> <td data-bbox="358 546 505 645">연령 및 선정기준</td> <td data-bbox="505 546 1442 645">만 6세(2014년생) 이상의 등록장애인(*연령:~2014.12.31.)</td> </tr> <tr> <td data-bbox="358 645 505 810">★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data-bbox="505 645 1442 810">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td> </tr> <tr> <td data-bbox="358 810 505 929">유의사항</td> <td data-bbox="505 810 1442 929">□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만 6세(2014년생) 이상의 등록장애인(*연령:~2014.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만 6세(2014년생) 이상의 등록장애인(*연령:~2014.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58 1069 764 1203">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764 1069 1484 1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d> </tr> <tr> <td data-bbox="358 1203 764 1271">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764 1203 1484 1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td> </tr> <tr> <td data-bbox="358 1271 764 1368">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td> <td data-bbox="764 1271 1484 13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17. 8. 9. 부터) </td> </tr> </table> <p>⑤장애인등록증</p>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17. 8. 9. 부터)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17. 8. 9. 부터)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58 1568 545 1942">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45 1568 1484 1942">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신고된 승마장을 소유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승마장)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 2015년 이전 등록기관 : 계약 중인 전용시설과의 계약사항을 군구에 제출하여 보고(시설이용확인서 별도 제출) ■ 2015년 이후 등록기관 : 승마장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은 전용시설을 소유한 기관만 등록 가능함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신고된 승마장을 소유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승마장)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 2015년 이전 등록기관 : 계약 중인 전용시설과의 계약사항을 군구에 제출하여 보고(시설이용확인서 별도 제출) ■ 2015년 이후 등록기관 : 승마장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은 전용시설을 소유한 기관만 등록 가능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신고된 승마장을 소유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승마장)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 2015년 이전 등록기관 : 계약 중인 전용시설과의 계약사항을 군구에 제출하여 보고(시설이용확인서 별도 제출) ■ 2015년 이후 등록기관 : 승마장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은 전용시설을 소유한 기관만 등록 가능함 								

항 목	내 용
-----	-----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p>서비스 1회 제공 시 교관1인, 리더1인, 사이드워커2인 동시 참여</p>	<p>○ 교관 제공인력은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인)</p> <p>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로 자격취득 이후의 승마지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p> <p>② 마필관련학 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취득 이후 승마지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p> <p>③ "말산업육성법" 제12조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p> <p>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승마관련 지도자(지도자 보조자격은 제외)로서 승마지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①,②,④에서 규정하는 실무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에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리더 제공인력은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인)</p> <p>① 사이드워커 경력 100회 이상인자(실제 제공횟수가 기입된 경력증명서 제출)</p> <p>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승마관련 지도자 민간자격증 소지자</p> <p>○ 사이드 워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2인)</p> <p>- 교관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자(교육확인증 제출)</p>
--	--

▶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

<p>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p>	<p>▶ 월 22만원(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h>(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98,000원(90%)</td> <td>187,000원(85%)</td> <td>176,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2,000원(10%)</td> <td>33,000원(15%)</td> <td>44,000원(20%)</td> </tr> </tbody> </table> <p>* 2018년부터 서비스 가격 조정 및 차등화 적용</p> <p>▶ 회차별 금액</p> <p>[정부지원금] 1등급:49,500원 / 2등급:46,750원 / 3등급:44,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5,500원 / 2등급:8,250원씩 / 3등급:11,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가능)</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지원금	198,000원(90%)	187,000원(85%)	176,000원(80%)	본인부담금	22,000원(10%)	33,000원(15%)	44,000원(2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지원금	198,000원(90%)	187,000원(85%)	176,000원(80%)										
본인부담금	22,000원(10%)	33,000원(15%)	44,000원(20%)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구 분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p>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기본서비스</p>	<p>1. 사전·사후 검사</p> <p>-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성기능 등 현재 상태 파악</p> <p>- 검사지 : 기초신체검사, 기승평가검사 실시 2종 실시</p> <p style="color: blue;">➔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p>연 2회</p> <p style="color: blue;">(바우처 결제불가)</p>
	<p>2. 재활승마</p> <p>- 초기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p> <p>- 신뢰관계 형성</p> <p>- 각 회당 준비시간 10분, 기승 20분, 부모상담 10분</p> <p>- 재활승마프로그램 실시</p> <p style="color: blue;">➔ 상담일지 별도첨부</p>	<p>주1회씩</p> <p>월 4회</p> <p>(회당 40분)</p>

항 목	내 용						
	<p>▶ 서비스 제공 절차</p> <p>① 1단계 :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성기능 등 현재 상태파악 및 상담(사전검사 2중 의무 실시)</p> <p>② 2단계 : 승마프로그램 실시</p> <p>③ 3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만족도검사(사후검사 2중 의무 실시)</p>						
⑦ 서비스 실시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p> <p>○ 서비스 집단규모 4:1 (제공인력 4명과 이용자 1명 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시 <u>이용자 1명당 교관 1명+리더 1명+사이드 워커 2명</u> 필요 - 교관 1인이 동시에 이용자 3명 서비스 제공가능 <p>○ 사전·사후 검사 : 기초신체검사, 기승평가검사 총 2중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등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 <p>○ 결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p>○ 보강 실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p> <p>○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p>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p>○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p> <table border="1" data-bbox="370 1754 1484 2038"> <thead> <tr> <th data-bbox="370 1754 756 1793">구 분</th> <th data-bbox="756 1754 1484 1793">세부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0 1793 756 1960">2015년 이전 등록제공기관</td> <td data-bbox="756 1793 1484 1960">-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 -서비스 제공장소로 신고한 시설(승마장)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td> </tr> <tr> <td data-bbox="370 1960 756 2038">2015년 이후 등록제공기관</td> <td data-bbox="756 1960 1484 2038">-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사항	2015년 이전 등록제공기관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 -서비스 제공장소로 신고한 시설(승마장)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	2015년 이후 등록제공기관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
구 분	세부사항						
2015년 이전 등록제공기관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 -서비스 제공장소로 신고한 시설(승마장)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						
2015년 이후 등록제공기관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14호 참고) ○ 제공기관 등록 시, 체육시설업(승마장) 신고증명서 제출 필수 ○ 제공기관 등록 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u>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u>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7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사·군·구 공동) / 사업코드 1303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진로발달과정상 진로인식 단계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전형성과 진로탐색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여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직업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진로에 대한 정보 안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도모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소득</td> <td>기준중위소득 120% 이하</td> </tr> <tr> <td>연령</td> <td>만 7세(2013년생)~만 15세(2005년생) 이하 아동·청소년 (*연령 : 2005.01.01.~2013.12.31.)</td> </tr> <tr> <td>★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td> </tr> <tr> <td>유의사항</td> <td><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만 7세(2013년생)~만 15세(2005년생) 이하 아동·청소년 (*연령 : 2005.01.01.~2013.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만 7세(2013년생)~만 15세(2005년생) 이하 아동·청소년 (*연령 : 2005.01.01.~2013.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table border="1"> <tr> <td>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d> </tr> <tr> <td>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5세이하인 경우</td> <td>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td> </tr> </table>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5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5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6.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p>[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강화군, 중구 용유도 및 영종도(운서동 제외)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 사회복지관 추가 활용가능</p>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36.3㎡이상이어야 함.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6.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p>[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강화군, 중구 용유도 및 영종도(운서동 제외)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 사회복지관 추가 활용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36.3㎡이상이어야 함.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6.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p>[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강화군, 중구 용유도 및 영종도(운서동 제외)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 사회복지관 추가 활용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36.3㎡이상이어야 함.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항 목	내 용
	<p>○ 교육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강화군은 ⑥ 포함)</p> <p>①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정교사나 중학교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직업상담사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p> <p>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p> <p>③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p> <p>④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자</p> <p>㉠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직업탐색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p> <p>㉡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직업탐색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p> <p>㉢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직업탐색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p> <p>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취득한 자격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⑥ 강화군만 해당 : 인문학, 사회과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직업탐색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자</p> <hr/> <p>○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인문학(문학, 역사학, 철학), 사회과학(사회학, 정치·외교학, 법학, 종교학, 도덕학, 인류학, 경영학, 심리학, 지리학, 교육학, 행정학, 여성학, 언론·방송·매체학, 사회복지학, 아동청소년학, 관광학), 교육학, 자연과학(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해양학, 지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p> <p>㉡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p> <p>㉢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p> <p>② 교육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p> <p>* ①에서 규정하는 전공 외에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hr/>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해당 학위 및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가능함.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항 목	내 용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p>월 16만원 (정부지원 70~80% / 본인부담 20~30%)</p> <table border="1" data-bbox="532 385 1356 523">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28,000원(80%)</td> <td>112,000원(7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32,000원(20%)</td> <td>48,000원(30%)</td> </tr> </tbody> </table> <p>* 2018년도부터 본인부담금 비율 조정</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32,000원씩 / 2등급:28,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8,000원씩 / 2등급:12,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32,000원(20%)	48,000원(3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32,000원(20%)	48,000원(30%)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 12개월 중 비전형성서비스 4개월+직업탐색서비스 8개월 시행</p> <table border="1" data-bbox="373 854 1489 1510">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 및 횟수</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사전사후검사 (총 2종)</td> <td>▷ 비전형성서비스 검사도구(택 1 이상)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 직업탐색교육서비스 검사도구(택 1 이상) -홀랜드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td> <td>연 2회</td> </tr> <tr> <td rowspan="2">기본서비스 (총 4개월)</td> <td>-교육프로그램 : 자존감회복, 라이프코칭, 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자기이해증진</td> <td>4개월 (12회) 월 3회 회당 120분</td> </tr> <tr> <td>-비전체험프로그램 : 비전형성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체험 실시</td> <td>4개월 (4회) 월 1회 회당 360분 이상</td> </tr> <tr> <td rowspan="2">직업탐색서비스 (총 8개월)</td> <td>-교육프로그램 : 진로정보탐색,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설계</td> <td>8개월 (24회) 월 3회 회당 120분</td> </tr> <tr> <td>-직업탐색체험서비스 : 직업탐색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체험 실시</td> <td>8개월 (8회) 월 1회 회당 360분 이상</td> </tr> <tr> <td>부모교육 및 부모상담</td> <td>-학부모 진로교육 (자녀 진로지도 방법, 직업세계의 이해과정 등) -전화, 상담,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td> <td>월 1회 제공 (제공기록지 기록 필수)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이용자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검사 실시(비전 1종, 직업 1종 총 2종 이상) 2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제공 매월 학부모 진로교육서비스(자녀 진로지도방법, 직업세계의 이해과정 등) 실시 3단계 : 서비스 종결 및 만족도검사, 사후검사 실시(비전 1종, 직업 1종 총 2종 이상)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	사전사후검사 (총 2종)	▷ 비전형성서비스 검사도구(택 1 이상)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 직업탐색교육서비스 검사도구(택 1 이상) -홀랜드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	연 2회	기본서비스 (총 4개월)	-교육프로그램 : 자존감회복, 라이프코칭, 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자기이해증진	4개월 (12회) 월 3회 회당 120분	-비전체험프로그램 : 비전형성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체험 실시	4개월 (4회) 월 1회 회당 360분 이상	직업탐색서비스 (총 8개월)	-교육프로그램 : 진로정보탐색,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설계	8개월 (24회) 월 3회 회당 120분	-직업탐색체험서비스 : 직업탐색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체험 실시	8개월 (8회) 월 1회 회당 360분 이상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학부모 진로교육 (자녀 진로지도 방법, 직업세계의 이해과정 등) -전화, 상담,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월 1회 제공 (제공기록지 기록 필수) (바우처 결제불가)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																			
사전사후검사 (총 2종)	▷ 비전형성서비스 검사도구(택 1 이상)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 직업탐색교육서비스 검사도구(택 1 이상) -홀랜드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	연 2회																			
기본서비스 (총 4개월)	-교육프로그램 : 자존감회복, 라이프코칭, 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자기이해증진	4개월 (12회) 월 3회 회당 120분																			
	-비전체험프로그램 : 비전형성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체험 실시	4개월 (4회) 월 1회 회당 360분 이상																			
직업탐색서비스 (총 8개월)	-교육프로그램 : 진로정보탐색,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설계	8개월 (24회) 월 3회 회당 120분																			
	-직업탐색체험서비스 : 직업탐색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체험 실시	8개월 (8회) 월 1회 회당 360분 이상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학부모 진로교육 (자녀 진로지도 방법, 직업세계의 이해과정 등) -전화, 상담,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월 1회 제공 (제공기록지 기록 필수) (바우처 결제불가)																			
⑦ 서비스 실시지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p> <p>※ 단, 강화군, 중구 용유도 및 영종도(운서동 제외)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을 추가확보시설로 활용이 가능함 (군구 사전승인 필수)</p> <p>⇒ 추가확보시설 신고 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별도 제출</p>																				

항 목	내 용						
	<p>[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p> <p>▷ 필수 명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 <p>▷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 (다음페이지 계속)</p> <p>▷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p> <p>▷ 학교/사회복지관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p>						
	<p>○ 서비스 집단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 1:10이하(제공인력 1명당 10명이하의 이용자 매칭) - 체험활동프로그램 1:15이하(제공인력 1명당 15명이하의 이용자 매칭) <p>○ 사전·사후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일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검사도구 (각 서비스당 1종 이상 실시, 총 2종 필수 실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검사도구</th> </tr> </thead> <tbody> <tr> <td>비전형성서비스</td> <td>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중 1종 이상 실시</td> </tr> <tr> <td>직업탐색서비스</td> <td>홀랜드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 중 1종 이상 실시</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 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부모교육 및 상담 내용 반드시 제공기록지에 작성 : 실시방법, 제공내용 등 구체적 기록 <p>○ 결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p>○ 비전형성·직업탐색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된 교육내용이어야 함. … 절대 다른활동으로 대체될 수 없음 - 서비스 세부 매뉴얼 예시에 준하는 교육 실시(붙임자료 참고) - 초등학생(저학년/고학년), 중학생에 따라 이용자의 연령 수준에 맞도록 매뉴얼 구성 및 실시 	서비스명	검사도구	비전형성서비스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중 1종 이상 실시	직업탐색서비스	홀랜드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 중 1종 이상 실시
서비스명	검사도구						
비전형성서비스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중 1종 이상 실시						
직업탐색서비스	홀랜드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 중 1종 이상 실시						

항 목	내 용
-----	-----

- 비전형성·직업탐색 **체험프로그램** 진행 시, 유의사항
 - 반드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체험활동이어야 함. ... **절대 다른활동으로 대체될 수 없음**
 - 서비스 세부 매뉴얼 예시에 준하는 교육 실시(붙임자료 참고)
 - **7천원 이상의 유료 상품(체험비 및 입장료 등)** 실시 계획을 포함할 것
 - **등록 군구가 승인한 정식 제공인력이 아닌 자원봉사자나 인턴 투입 불가**
 - 안전관리 준수사항

체험활동 시 안전관리 준수사항			
	항 목	구비서류	필수사항
1	여행사 관련	▷차량임대계약서 ▷배상/상해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차량등록증	▷차량임대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 양측의 안전관리책임 명시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명시 ▷중간알선업자(체험전문업체 등) 계약금지
2	제공기관 준비사항	▷체험활동 개요 및 일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사전 안전교육일지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사업별서식제25호) ▷여행자보험서류 ▷체험시설 안전확인 사항 기록지 등	▷이용자, 제공인력 대상 사전 안전교육 필수 ▷체험활동 진행 전, 보호자동의서 사전 구비 * 해당 체험활동에 대한 상세사항 안내 필수 ▷여행자보험서류에 참석자 명단 명시 ▷보험가입 시,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유의 ▷제공기관 자체 차량 운행 시에도 차량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차량등록증 구비 필수 * 상시로 자체 차량 운행 시, 등록 군구에 사전 보고 필수(제출서류 동일)
➔ 위 서류들은 최초 1회가 아닌, 매회차별로 구비해둬야 함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별도 파일 관리 필요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
- 제공기관 등록 시, **비전형성&직업탐색 모두를 포함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예) 비전형성서비스 4개월분(교육/체험), 직업탐색서비스 8개월분(교육/체험) 포함

(붙임 1) 아동청소년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참고자료

1. 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 「아동청소년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진로탐색을 통해 ‘다양한 일에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직업의 기능 및 중요성 이해’를 도와 진로발달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비전형성, 진로교육과 체험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어야 함.
- 서비스의 효과성 측정을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 실시
 - 검사 유형
 - 진로적성검사(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www.jinhak.or.kr)
 - 직업심리검사 등(워크넷 www.work.go.kr)
 - 진로적성검사, 자아가치관 등(한국 가이드스 www.guidance.co.kr)
 - SLT자기조절학습검사(한국 가이드스 www.guidance.co.kr)
- 사업 세부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저학년/고학년), 중학생에 따라 각 수준에 맞도록 매뉴얼 구성 필요

2. 월별 사업 흐름

자기이해		비전형성 교육(월 3회,4개월)	직업탐색 교육(월 3회,8개월)
- 자기 이해 및 심성 계발 - 가치관 확립 - 진로검사	⇒	- 자존감 회복 - 라이프코칭 - 리더십 확립 - 자기주도학습 - 자기이해증진	-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 진로 설계 - 일의 탐색 - 직업정보 탐색
		비전형성 체험서비스(월 1회,4개월)	직업탐색 체험서비스(월 1회,8개월)
		월 1회 이상 비전형성교육과 관련된 외부 체험 실시	월 1회 이상 직업탐색교육과 관련된 외부 체험 실시
+			
부모 교육(월1회)			
- 방법 : 집합 또는 전화상담 등 - 내용 : 비전형성 및 진로교육의 이해, 자녀 이해방법			

3. 직업탐색 프로그램 관련 사이트

- 커리어넷 www.career.go.kr
- 서울진학진로정보센터 www.jinhak.or.kr
- 한국 가이드스 www.guidance.co.kr
- 워크넷 www.work.go.kr

비전형성서비스 매뉴얼 예시 (총 4개월)

회기	분류	내용	회기	분류	내용
1	비전 교육 1	<p><위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과 라포형성을 위한 레크레이션 -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의 비전형성 서비스 안내 <p><사전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랜드 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 중 1종 이상 실시 -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중 1종 이상 실시 <p>※ 각 1종 씩, 총 2종을 필수로 실시</p>	2	비전 교육 2	<p><자기이해와 탐색-나는 어떤 사람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및 별칭 정하기 - 나에 대해서 알아보기 : 마인드맵 만들기 - 나의 장단점 찾기 : 장점 사과나무 - 자신의 잠재역량 계발하기 : 내안의 숨은 보물찾기
3	비전 교육 3	<p><자기이해와 탐색나의 가치관과 꿈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역할 찾기 - 가치관 이해 및 설정하기 - 나의 가치관 발견하기 - 나의 꿈 설계하기 	4	체험	<p><비전형성체험></p> <p>-코엑스 아쿠아리움 체험활동</p> <p>: 해양 생태계 관찰 및 체험활동, 해양관련 직업 학습 체험, 실생활에서 해양 생태계 활용 적용 사례 관찰 체험</p>
5	부모 교육	<p><부모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사 결과 안내 및 상담 - 비전형성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비전형성을 위한 부모 역할코칭 상담 	6	비전 교육 1	<p><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부여와 목표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탐색 - 전략과목/취약과목 탐색 : 성적표 분석 - 나만의 공부목표 설정 : 학습목표 수치화
7	비전 교육 2	<p><자기주도학습-학습 방법의 중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수업시간의 중요성과 교과서 중심의 공부법 : 학교수업 10대 원칙 - 필기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필기 방법 - 예습·복습의 방법 	8	비전 교육 3	<p><자기주도학습-시간관리의 중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관리와 학습 플래너 작성하는 방법 : 우선순위 정하기 - 학습시간표 만들기 및 자투리 시간 활용법
9	체험	<p><비전형성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탐방 및 관계자 면담 	10	부모 교육	<p><학습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학습 습관을 알아보고, 자기주도적이며 효율적인 공부 방법 제시
11	비전 교육 1	<p><자기이해-나와 주변관계 이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주변 사람 알아보기(가족, 친구, 선생님) - 내 주변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알아보기 - 이들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알아보기 	12	비전 교육 2	<p><라이프코칭-올바른 소통방법 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경청기술 익히기 - 커뮤니케이션 스킬 습득하기
13	비전 교육 3	<p><라이프코칭-나를 변화시키는 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해무익 행동 프로그램 - 나만의 원칙 세우기 - 긍정습관 만들기 : 긍정적인/부정적인 말들이 미치는 영향 	14	체험	<p><비전형성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교육 및 다도체험
15	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변화시키는 부모의 라이프코칭 방법 	16	비전 교육 1	<p><리더십향상-리더의 자질 기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능력 키우기 :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타인 존중과 배려의 방법 - 도전과 실천의 법칙
17	비전 교육 2	<p><리더십향상-꿈을 경영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에 대한 의지와 몰입의 원칙 - 자기 경영의 법칙 	18	비전 교육 3	<p><나의 비전세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문, 미전문 만들기 - 롤링페이퍼 쓰기
19	체험	<p><비전형성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공항철도 체험 : 공항시설 관찰 체험, 공항관련 직업군 탐색 및 관찰 체험 	20	부모 교육	<p><부모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게 리더십을 키워주는 방법

직업탐색교육서비스 매뉴얼 예시(총 8개월)

회기	분류	내용	회기	분류	내용
1	진로 교육1	<p><위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의 직업탐색 교육서비스 안내 - 사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현재의 나 알기 	2	진로 교육 2	<p><진로정보탐색-진로의 이해와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 중요성 이해와 인식 -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고 실천하기 - 일을 즐겁게 할 때 좋은 점 살펴보기
3	진로 교육3	<p><진로정보탐색-나의 적성과 진로/인문사회영역 직업군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 알고 싶은 나 - 나의 적성과 진로 찾기 : 성격과 진로와의 관계 - 인문사회영역 직업탐색 	4	체험	<p><진로체험-인문사회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체험 - 경찰박물관 견학 및 체험
5	부모 교육	<p><학부모 진로교육-내 자녀 이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위한 학부모 코칭 	6	진로 교육 1	<p><진로정보탐색-나의 꿈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흥미와 진로 찾기 - ‘꿈 찾기 보물지도’ 그리기
7	진로 교육2	<p><진로정보탐색-일을 왜 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학급에서 할 수 있는 일 알기 - 가정, 학급에서 나의 역할 알기 	8	진로 교육 3	<p><진로정보탐색-문화·예술 분야 직업군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분야 직업의 종류 - 문화·예술 분야 직업을 갖기 위해 해야하는 일 - 직업과 관련된 활동(동영상자료 감상, 만들기 활동 등)
9	체험	<p><진로체험-문화·예술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영화박물관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10	부모 교육	<p><학부모 진로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녀 진로지도 방법
11	진로 교육1	<p><진로체험-직업 가치관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직업 가치관 찾기 - 직업선택 우선순위 정하기 	12	진로 교육 2	<p><진로정보탐색-이런 사람을 닮고 싶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존경하는 사람 찾아보기 - 존경하는 사람의 성공요인 찾기
13	진로 교육3	<p><진로정보탐색-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이공계직업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사람들의 직업 알아보기 - 가족, 친척의 직업에 대해 조사하기 - 이공계 직업의 종류에 대해 탐색 	14	체험	<p><진로체험-이공계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관련 직종 -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하기
15	부모 교육	<p><학부모 진로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세계의 이해 	16	진로 교육 1	<p><진로정보탐색-미래의 나의 모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꿈 펼쳐보기 : 미래의 나의 명함 -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
17	진로 교육2	<p><진로정보탐색-직업은 소중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 직업의 소중함 알기 	18	진로 교육 3	<p><진로정보탐색-나는 이런분을 닮고 싶어요./이공계 영역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가족, 선생님의 본받을 점, 훌륭한 점 찾아보기 - 이공계 영역 직업군 탐색
19	체험	<p><진로체험-이공계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관련직종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견학 프로그램 	20	부모 교육	<p><학부모 진로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다양성과 직업세계 변화
21	진로 교육1	<p><진로정보탐색-직업의 다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삶의 보람 : 직업에 대한 편견 버리기 - 퍼즐로 맞춰보는 직업 : 퍼즐과 연상되는 직업 찾기 	22	진로 교육 2	<p><진로정보탐색-행복한 삶과 직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삶과 직업과의 관계 알아보기 -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중요성 알아보기
23	진로 교육3	<p><진로정보탐색-나의 꿈을 들려줄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되고 싶은 것 발표하기 	24	체험	<p><진로체험-인문사회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공무원, 국회의원

직업탐색교육서비스 매뉴얼 예시(총 8개월)

회기	분류	내용	회기	분류	내용
		- 친구들의 미래의 꿈 알아보기 <사후검사> - 홀랜드 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 중 1종 이상 실시 -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중 1종 이상 실시 ※ 각 1종 씩, 총 2종을 필수로 실시			- 국회의사당 체험 프로그램 실시
25	부모 교육	<학부모 진로교육> - 자녀에게 꿈을 키워주는 방법 - 내 자녀 진로지도 방법 - 사후검사 결과 안내	.	.	.
	체험 프로그램 예시	<이공계영역> - 수질관리사(암사아리수정수센터 견학 및 체험) - 은행관련(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견학 및 체험) - 자동차 관련(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		체험 프로그램 예시	<인문사회영역> - 직업군인(육군사관학교 견학 및 체험) - 기자 및 편집관련(신문사 견학) - 방송관련(MBC 견학 프로그램, KBS 견학홀 견학 프로그램,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체험 프로그램) - 안보, 경찰관련 직종(안보전시관 체험 및 견학) - 외교관련(외교사료관 견학) - 입법 공무원, 국회의원(국회의사당 체험)
	체험 프로그램 예시	<문화·예술영역> - 애니메이션관련 직종(서울애니메이션센터 체험교실) - 영화관련(한국영화박물관 견학) - 전통공예관련(한국문화의 집 체험)		체험 프로그램 예시	<기타> - 동물 사육사(서울대공원 체험) - 제과 및 제빵사(떡 박물관 체험) - 화장품관련(Space C 견학)

8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2003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성인병이 조기 발병하여 질환을 오랜 기간 보유하다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소득</td> <td>기준중위소득 140% 이하</td> </tr> <tr> <td>연령 및 선정기준</td> <td>만 13세(2007년생) 이상의 등록 장애인(*연령:~2007.12.31.)</td> </tr> <tr> <td>★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td> </tr> <tr> <td>유의사항</td> <td>□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만 13세(2007년생) 이상의 등록 장애인(*연령:~2007.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만 13세(2007년생) 이상의 등록 장애인(*연령:~2007.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table border="1"> <tr> <td>신청자가 만13세인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d> </tr> <tr> <td>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td> <td>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td> </tr> <tr> <td>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td> <td>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td> </tr> </table> <p>⑤장애인등록증</p>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④ 제공기관 및 인력</td> <td>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19년 8월 변경)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r> <td>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 2020년 변경 제공기관이 등록된 군구와 동일한 소재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한하여 추가 활용가능(등록 군구의 사전승인 필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33㎡이상이어야 함. ('19년 8월 집단규모 변경에 따른 시설 면적기준 변경)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td> </tr> </table>	신청자가 만13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④ 제공기관 및 인력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19년 8월 변경)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 2020년 변경 제공기관이 등록된 군구와 동일한 소재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한하여 추가 활용가능(등록 군구의 사전승인 필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33㎡이상이어야 함. ('19년 8월 집단규모 변경에 따른 시설 면적기준 변경)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신청자가 만13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④ 제공기관 및 인력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19년 8월 변경)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 2020년 변경 제공기관이 등록된 군구와 동일한 소재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한하여 추가 활용가능(등록 군구의 사전승인 필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33㎡이상이어야 함. ('19년 8월 집단규모 변경에 따른 시설 면적기준 변경)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항 목	내 용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p>○ 맞춤형운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생활스포츠지도사로서 자격 또는 학위 취득 이후 장애인 대상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p> <p>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장애인 대상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p> <p>③ 체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장애인 대상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p> <p>④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p> <p>※ 단, ①,②,③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해당 자격 및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가능함.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기초검사 및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인력(1인이상 필수) - 체육학 또는 특수체육학 전공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p>									
<p>⑤ 서비스 가격/제공기간</p>	<p>▶ 월 19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527 959 1425 1102">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70,000원</td> <td>150,000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000원</td> <td>40,000원</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1,250원씩 / 2등급:18,75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2,500원씩 / 2등급:5,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70,000원	15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70,000원	15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p>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경증 구분을 삭제하고 기존 중증이용자에 대한 기준정보로 통일 ('19년 8월 변경적용) ※ ⑧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필독</p> <table border="1" data-bbox="370 1487 1481 2025">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 및 횟수</th> <th>서비스 횟수('19년 8월 변경)</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 <p>▷ 이용자별 다음의 검사 실시 - 기초체력검사 또는 체성분검사(택 1) ▷ 전문가와의 건강상담, 등록상담, 욕구판정, 운동처방 ▷ '맞춤운동서비스' 초기 1회 실시 이전에 반드시 1회 실시해야 함(사전검사 겸 운동처방)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운동서비스 실시</p> <p>▶ 제공기록지에 내용 작성, 검사결과지 별도첨부</p> <p>※ 맞춤운동서비스로 대체 불가(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경고 및 환수조치됨)</p> </td> <td> <p>분기별 1회 (공통) 1:5이하</p> </td> </tr> <tr> <td>맞춤운동 서비스</td> <td>근력운동 및 유산소 운동</td> <td> <p>주2회씩 월8회(회당 60분) (공통) 1:5이하</p> </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19년 8월 변경)	기본 서비스	<p>▷ 이용자별 다음의 검사 실시 - 기초체력검사 또는 체성분검사(택 1) ▷ 전문가와의 건강상담, 등록상담, 욕구판정, 운동처방 ▷ '맞춤운동서비스' 초기 1회 실시 이전에 반드시 1회 실시해야 함(사전검사 겸 운동처방)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운동서비스 실시</p> <p>▶ 제공기록지에 내용 작성, 검사결과지 별도첨부</p> <p>※ 맞춤운동서비스로 대체 불가(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경고 및 환수조치됨)</p>	<p>분기별 1회 (공통) 1:5이하</p>	맞춤운동 서비스	근력운동 및 유산소 운동	<p>주2회씩 월8회(회당 60분) (공통) 1:5이하</p>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19년 8월 변경)								
기본 서비스	<p>▷ 이용자별 다음의 검사 실시 - 기초체력검사 또는 체성분검사(택 1) ▷ 전문가와의 건강상담, 등록상담, 욕구판정, 운동처방 ▷ '맞춤운동서비스' 초기 1회 실시 이전에 반드시 1회 실시해야 함(사전검사 겸 운동처방)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운동서비스 실시</p> <p>▶ 제공기록지에 내용 작성, 검사결과지 별도첨부</p> <p>※ 맞춤운동서비스로 대체 불가(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경고 및 환수조치됨)</p>	<p>분기별 1회 (공통) 1:5이하</p>								
맞춤운동 서비스	근력운동 및 유산소 운동	<p>주2회씩 월8회(회당 60분) (공통) 1:5이하</p>								

항 목	내 용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p> <p>② 2단계 : 사전검사 실시</p> <p>③ 3단계 : 초기 맞춤형 운동처방실시, 운동처방내용을 토대로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p> <p>④ 4단계 : 맞춤형 운동서비스 및 기초검사/운동처방 실시</p> <p>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p>
⑦ 서비스 실시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원칙 적용</p> <p>※ 제공기관이 등록된 군구와 동일한 소재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을 추가확보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군구 사전승인 필수) → 2020년 변경</p> <p>⇒ 추가확보시설 추가 신고 시에는 ‘사회서비스제공자 시설확보현황 변경신청서(사업별서식 제20호)’와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를 모두 제출해야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p> <p>▷ 필수 명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 <p>▷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p> <p>▷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p> <p>▷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p> </div> <p>○ 서비스 집단규모 : ‘19년 8월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경증 구분을 삭제하고 기존 중증이용자에 대한 기준정보로 통일하여 적용하고자 함.(‘19년 8월 서비스 제공분부터 적용 가능) - 집단규모 1:5 이하 실시 - 그룹화는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p>○ 사전·사후검사 및 분기별 기초검사·운동처방서비스 실시방법 (총 4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1회) : 맞춤형운동서비스 초기 1회기 실시 이전에 실시 ㉡ 분기별 1회씩 총 2회 실시 : 기초검사, 건강상담, 욕구판정, 운동처방 등 ㉢ 사후검사(1회) : 서비스 종료월 이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효과 측정 → 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 * 검사 결과는 1부는 이용자 제공, 1부는 이용자별 관리파일에 함께 보관 * 기초검사·운동처방서비스는 반드시 분기별 1회 실시해야 하며, 맞춤형운동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음. (미준수 시, 경고 및 환수조치) * 이용자별 기초검사·운동처방 실시 후 이용자 욕구 및 처방결과에 따른 맞춤형운동서비스 실시

항 목	내 용
-----	-----

(예시) 1월에 시작하는 이용자 A에 대한 실시과정

- ㉠맞춤운동 1회기 시작 이전에 기초검사·운동처방 1회 실시(사전검사에 해당)
- ㉡맞춤운동 1회기 시작 후, 2분기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기초검사·운동처방 1회 실시
- ㉢2분기 기초검사·운동처방 실시 후, 맞춤운동 실시
- ㉣3분기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기초검사·운동처방 1회 실시
- ㉤3분기 기초검사·운동처방 실시 후, 맞춤운동 실시
- ㉥종료월 이내 기초검사·운동처방 1회 실시 및 종결(사후검사에 해당)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기초검사·운동처방을 **맞춤운동서비스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경고 및 환수조치함**
- ➔기초검사·운동처방은 반드시 분기별 실시해야 함(미실시의 경우에도 기준정보 위반에 해당)

○ 맞춤운동서비스 실시방법

- 맞춤운동서비스는 월 8회 제공이 원칙이나, 분기별 기초검사·운동처방서비스를 실시하는 월에는 1회씩 축소하여 제공
- ***맞춤운동서비스를 기초검사·운동처방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음.**

(예시)

● : 기초검사·운동처방 ▲ : 맞춤운동서비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회 ▲7회	▲8회	▲8회	▲8회	●1회 ▲7회	▲8회	▲8회	▲8회	●1회 ▲7회	▲8회	▲8회	●1회 ▲7회

- ➔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경고 및 환수조치함.**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 * **2017년도부터 서비스 제공기록지 서식 변경**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기초검사 및 운동처방서비스 내용도 반드시 제공기록지에 작성
- **제공인력 서명 시, '기초검사 및 운동처방서비스'와 '맞춤운동서비스' 각각의 제공인력이 직접 서명해야 함.(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용, 참여 제공인력 및 서명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중증/경증 구분이 삭제됨에 따라 '19년 8월 서비스 제공분부터 수정하여 반영 가능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기록해야 함. ■ ‘기초검사 및 운동처방서비스’ 담당 제공인력은 분기별 1회 서비스 제공 후, 회당 금액 결제 및 제공기록지 기록 ■ ‘맞춤운동서비스’ 담당 제공인력은 매주 정해진 서비스 횟수만큼 제공하고, 회당 금액 결제 및 제공기록지 기록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 <p style="color: red; margin-top: 10px;">○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p>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9 노인수중운동교실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0508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 도모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5 472 516 530">소득</td> <td data-bbox="516 472 1453 530">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td> </tr> <tr> <td data-bbox="375 530 516 851">연령 및 선정기준</td> <td data-bbox="516 530 1453 851">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생)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연령 : ~1955.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③ 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 ☞ ③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td> </tr> <tr> <td data-bbox="375 851 516 1019">★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data-bbox="516 851 1453 1019">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노인수중운동교실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td> </tr> <tr> <td data-bbox="375 1019 516 1088">중복제한</td> <td data-bbox="516 1019 1453 1088">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2019년 추가)</td> </tr> <tr> <td data-bbox="375 1088 516 1205">유의사항</td> <td data-bbox="516 1088 1453 1205">□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기준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생)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연령 : ~1955.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③ 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 ☞ ③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노인수중운동교실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2019년 추가)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기준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생)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연령 : ~1955.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③ 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 ☞ ③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노인수중운동교실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2019년 추가)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우선 선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 → 2020년 추가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 되어야 함. <table border="1" data-bbox="375 1643 1453 2045"> <tr> <td data-bbox="375 1643 553 2045">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53 1643 1453 2045"> 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수영장) : 85.8㎡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div>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수영장) : 85.8㎡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div>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수영장) : 85.8㎡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div>										

항 목	내 용								
	<p>제공인력 기준</p> <p>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수영 이외의 자격종목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의 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수영) ***수영 이외의 자격종목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③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노인 대상 수준운동 지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경력은 학위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⑤ 서비스 가격/제공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서비스 가격</td> <td> <p>▶ 월 12만원 [정부지원금] 11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11회기:9,160원씩 / 12회기:9,240원으로 산정 [본인부담금] 1~11회기:800원씩 / 12회기:1,200원으로 산정</p> </td> </tr> <tr> <td>이용자별 제공기간</td> <td>12개월</td> </tr> </table>	서비스 가격	<p>▶ 월 12만원 [정부지원금] 11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11회기:9,160원씩 / 12회기:9,240원으로 산정 [본인부담금] 1~11회기:800원씩 / 12회기:1,200원으로 산정</p>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가격	<p>▶ 월 12만원 [정부지원금] 11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11회기:9,160원씩 / 12회기:9,240원으로 산정 [본인부담금] 1~11회기:800원씩 / 12회기:1,200원으로 산정</p>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p>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서비스</td> <td> 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td> <td> 분기 1회 (회당 60분) (바우처 결제불가) </td> </tr> <tr> <td>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td> <td> 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 </td> </tr> </tbody> </table> <p>※ 1회 90분 내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p>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이용자의 욕구파악 ② 2단계 : 기초체력 및 체성분검사 실시 및 상담 (사전검사 실시)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사후검사 실시)</p>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기 1회 (회당 60분) (바우처 결제불가)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기 1회 (회당 60분) (바우처 결제불가)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남동구</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p>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집단활동형</p> <p>○ 서비스 집단규모 1: 25 이하</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일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상담일지 별도첨부)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분기별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점검 기록내용, 검사결과지&상담일지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p>○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p>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특성상 제공기관 등록방식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군구에(서비스 이용자 모집 군구) 각각 등록해야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A기관이 중구와 동구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희망 시, 중구와 동구에 각각 등록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장소(수영장) 소재지도 동일해야 함.</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역시 이용권을 선정받은 군구 내의 제공기관만 이용가능 ○ 서비스 제공장소(수영장)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 수영장을 임대하여 활용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 제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명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 ▷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 ▷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 ▷ 수영장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 </div>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보상) - 서비스 제공장소(수영장)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10 장애아동 학습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2102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장애아동 기본학습과 관련된 홈티칭 방식의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력 향상	
②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5세(2015년생)이상~만 18세(2002년생)이하인 자 (*연령:2002.01.01.~2015.12.31.)
	선정기준	소득 및 연령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①,②,③,④,⑤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등록장애인 ②특수교육대상아동(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특수학급에 입학되어있는 학생도 가능함)으로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 증빙하는 학교장 추천서 또는 특수학급 입학 확인서(학교장발행) 제출가능자 ③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교육청발행) 제출가능자 ④특수학급 입학자격에 해당하나 ②,③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제출가능자 ⑤현재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에 등원 중이면서 '장애아통합반' 대기증명서 제출가능자 ('17년 8월 추가)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⑤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특수교육대상아동 : 다음중 택1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서류여야 함.) ■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 증빙하는 학교장 추천서 ■ 학교장 발행 '특수학급 입학확인서' ■ 교육청 발행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 '장애아통합반' 대기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7년 8월 추가)		

항 목	내 용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29 431 1471 688"> <tr> <td data-bbox="329 431 505 688">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td> <td data-bbox="505 431 1471 688">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서비스 제공역량을 갖춘 사회적 경제조직에 한함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29 707 1471 815"> <tr> <td data-bbox="329 707 505 815"> 제공인력 기준 </td> <td data-bbox="505 707 1471 815">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사회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서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양성교육'을 120시간 이상 수료한 자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서비스 제공역량을 갖춘 사회적 경제조직에 한함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사회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서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양성교육'을 120시간 이상 수료한 자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서비스 제공역량을 갖춘 사회적 경제조직에 한함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사회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서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양성교육'을 120시간 이상 수료한 자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p>▶ 월 18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data-bbox="500 874 1404 998"> <thead> <tr> <th data-bbox="500 874 641 929">구분</th> <th data-bbox="641 874 1008 929">(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th> <th data-bbox="1008 874 1404 929">(2등급) 중위소득 100%초과~14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00 929 641 964">정부지원금</td> <td data-bbox="641 929 1008 964">162,000원(90%)</td> <td data-bbox="1008 929 1404 964">144,000원(80%)</td> </tr> <tr> <td data-bbox="500 964 641 998">본인부담금</td> <td data-bbox="641 964 1008 998">18,000원(10%)</td> <td data-bbox="1008 964 1404 998">36,000원(2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40,500원씩 / 2등급:36,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4,500원씩 / 2등급:9,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1회 재판정 가능 / 최대 24개월까지 지원)</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0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90%)	144,000원(80%)	본인부담금	18,000원(10%)	36,000원(2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0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90%)	144,000원(80%)											
본인부담금	18,000원(10%)	36,000원(20%)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21 1228 1471 1882"> <thead> <tr> <th data-bbox="321 1228 435 1262">구분</th> <th data-bbox="435 1228 1295 1262">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95 1228 1471 1262">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1 1262 435 1882" rowspan="4">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435 1262 1295 1503"> 1. 사전사후검사 : 아동 연령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 ▷미취학아동 : 포테이지검사, KISE-BAAT 총 2종 시행 ▷취학아동 : KISE-BAAT 시행 ※ 취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용자별 파일 별도 보관 (예) 이용자신청 시 제출한 증명서류 사본 등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td> <td data-bbox="1295 1262 1471 1503">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r> <td data-bbox="435 1503 1295 1733"> 2. 인지학습 / 일상생활훈련 ▷국어, 수학 등 인지 학습 진행, 교재 및 보조교재 사용하여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인사, 대소변 훈련, 의복 착탈의, 식사지도, 위생관리 및 버스타기, 시장놀이 등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일상생활 훈련 지도 ➔ 상담일지 별도첨부 (2번&3번 일괄 작성) </td> <td data-bbox="1295 1503 1471 1733">월 4회(주 1회) 회당 40분</td> </tr> <tr> <td data-bbox="435 1733 1295 1825"> 3. 학부모 상담 및 서비스 수행 내용 설명, 욕구조사 ➔ 상담일지 별도첨부(2번&3번 일괄 작성) </td> <td data-bbox="1295 1733 1471 1825">월 4회(주 1회) 회당 10분</td> </tr> <tr> <td data-bbox="435 1825 1295 1882"> 4. 월별 사례회의 : 사례회의 실시 사항 별도 관리 </td> <td data-bbox="1295 1825 1471 1882">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신청된 대상자 초기상담 및 사전검사 실시(취학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사후검사</p>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사전사후검사 : 아동 연령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 ▷미취학아동 : 포테이지검사, KISE-BAAT 총 2종 시행 ▷취학아동 : KISE-BAAT 시행 ※ 취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용자별 파일 별도 보관 (예) 이용자신청 시 제출한 증명서류 사본 등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2. 인지학습 / 일상생활훈련 ▷국어, 수학 등 인지 학습 진행, 교재 및 보조교재 사용하여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인사, 대소변 훈련, 의복 착탈의, 식사지도, 위생관리 및 버스타기, 시장놀이 등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일상생활 훈련 지도 ➔ 상담일지 별도첨부 (2번&3번 일괄 작성)	월 4회(주 1회) 회당 40분	3. 학부모 상담 및 서비스 수행 내용 설명, 욕구조사 ➔ 상담일지 별도첨부(2번&3번 일괄 작성)	월 4회(주 1회) 회당 10분	4. 월별 사례회의 : 사례회의 실시 사항 별도 관리	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사전사후검사 : 아동 연령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 ▷미취학아동 : 포테이지검사, KISE-BAAT 총 2종 시행 ▷취학아동 : KISE-BAAT 시행 ※ 취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용자별 파일 별도 보관 (예) 이용자신청 시 제출한 증명서류 사본 등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2. 인지학습 / 일상생활훈련 ▷국어, 수학 등 인지 학습 진행, 교재 및 보조교재 사용하여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인사, 대소변 훈련, 의복 착탈의, 식사지도, 위생관리 및 버스타기, 시장놀이 등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일상생활 훈련 지도 ➔ 상담일지 별도첨부 (2번&3번 일괄 작성)	월 4회(주 1회) 회당 40분											
	3. 학부모 상담 및 서비스 수행 내용 설명, 욕구조사 ➔ 상담일지 별도첨부(2번&3번 일괄 작성)	월 4회(주 1회) 회당 10분											
	4. 월별 사례회의 : 사례회의 실시 사항 별도 관리	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											

항 목	내 용
⑦ 서비스 실시지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형태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집단규모 1:1 (이용권자가 한가정의 형제자매의 경우, 한 제공인력이 형제자매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사전·사후 검사 : ‘⑥서비스내용 및 제공절차’에 명시된 사항대로 준수하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일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p>※ 취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용자별 파일 별도 보관 (예) 이용자신청 시 제출한 증명서류 사본 등</p>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등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 ○ 월별 제공인력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 기록지 별도 관리·보관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p>○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p>
⑨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 ○ 등록 신청 시 연간 서비스 매뉴얼 별도 제출(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상담 매뉴얼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11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사·도 개발] / 사업코드 1803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성인 심리정서지원 및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소득</td> <td>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2019년 소득기준 상향조정</td> </tr> <tr> <td>연령</td> <td>만 18세(2002년생) 이상인자 (*연령:~2002.12.31.)</td> </tr> <tr> <td>★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성인심리상담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추가)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td> </tr> <tr> <td>유의사항</td> <td>□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2019년 소득기준 상향조정	연령	만 18세(2002년생) 이상인자 (*연령:~2002.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성인심리상담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추가)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2019년 소득기준 상향조정								
연령	만 18세(2002년생) 이상인자 (*연령:~2002.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성인심리상담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추가)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table border="1"> <tr> <td>신청자가 만18세인 경우</td> <td>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td> </tr> <tr> <td>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td> <td>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td> </tr> </table>	신청자가 만18세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신청자가 만18세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tr> <td>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r> <td>제공인력 기준</td> <td>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학, 아동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 취득 이후 성인 대상 상담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가족상담 및 치료 관련 학회에서 수여하는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는 ②의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으로 인정불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상담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성인대상 상담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학위 및 자격 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td> </tr> </table>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학, 아동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 취득 이후 성인 대상 상담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가족상담 및 치료 관련 학회에서 수여하는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는 ②의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으로 인정불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상담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성인대상 상담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학위 및 자격 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학, 아동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 취득 이후 성인 대상 상담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가족상담 및 치료 관련 학회에서 수여하는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는 ②의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으로 인정불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상담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성인대상 상담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학위 및 자격 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항 목	내 용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p>▶ 월 20만원(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data-bbox="527 397 1437 534">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th> <th>(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80,000원</td> <td>160,000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000원</td> <td>40,000원</td> </tr> </tbody> </table> <p>* 2019년도부터 본인부담금 차등화 적용</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45,000원씩 / 2등급:40,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5,000원씩 / 2등급:10,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6개월 (1회 재판정가능, 총 12개월까지 지원)</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65 815 1453 1607"> <thead> <tr> <th>서비스 구분</th> <th>서비스종류</th> <th>서비스내용</th> <th>제공시간</th> <th>제공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 서비스</td> <td>사전사후 검사</td> <td>· 사전검사, 가계도, 생태도, 생활력 표, 원가족 도 표, 관계도, 가족화(투사검사) 등 2종 이상의 검사를 통한 가족의 상호작용 및 주된 문제 파악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90분</td> <td>시작 월 이내 1회, 종료 월 이내 1회</td> </tr> <tr> <td>서비스 제공</td> <td>· 성인 심리상담 실시(집단규모 1:1) - 개인 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중심 적 개입 - 가족정서과정-분화수준, 삼각관계의 수정을 통한 가족 구성원간의 다세대 관계향상,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 통방식 이해, 가족의 체계와 경계를 파악하여 합리적 인 위계구조 설정,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 부모자녀 상호간 이해, 부모역할 상담, 부부관계 향상 도모 ※ 제공횟수를 준수하여 서비스 실시 (주2회이상 실시할 수 없음/보강제외) ➔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회당 60분 이상</td> <td>주 1회씩 월 4회</td> </tr> <tr> <td></td> <td>1. 개인종합심리평가(필요시) 2. 가족상담 진행(필요시)</td> <td>회당 60분</td> <td>요청 시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가족욕구사정 및 주된 호소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 사전검사 ② 2단계 : 목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서비스 제공(개인심리정서지원 등 문제해결중심 개입) ④ 4단계 : 사후검사 및 종결상담</p>					서비스 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가계도, 생태도, 생활력 표, 원가족 도 표, 관계도, 가족화(투사검사) 등 2종 이상의 검사 를 통한 가족의 상호작용 및 주된 문제 파악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90분	시작 월 이내 1회, 종료 월 이내 1회	서비스 제공	· 성인 심리상담 실시(집단규모 1:1) - 개인 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중심 적 개입 - 가족정서과정-분화수준, 삼각관계의 수정을 통한 가족 구성원간의 다세대 관계향상,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 통방식 이해, 가족의 체계와 경계를 파악하여 합리적 인 위계구조 설정,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 부모자녀 상호간 이해, 부모역할 상담, 부부관계 향상 도모 ※ 제공횟수를 준수하여 서비스 실시 (주2회이상 실시할 수 없음/보강제외) ➔ 상담일지 별도첨부	회당 60분 이상	주 1회씩 월 4회		1. 개인종합심리평가(필요시) 2. 가족상담 진행(필요시)	회당 60분	요청 시 (바우처 결제불가)
서비스 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가계도, 생태도, 생활력 표, 원가족 도 표, 관계도, 가족화(투사검사) 등 2종 이상의 검사 를 통한 가족의 상호작용 및 주된 문제 파악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90분	시작 월 이내 1회, 종료 월 이내 1회																			
	서비스 제공	· 성인 심리상담 실시(집단규모 1:1) - 개인 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중심 적 개입 - 가족정서과정-분화수준, 삼각관계의 수정을 통한 가족 구성원간의 다세대 관계향상,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 통방식 이해, 가족의 체계와 경계를 파악하여 합리적 인 위계구조 설정,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 부모자녀 상호간 이해, 부모역할 상담, 부부관계 향상 도모 ※ 제공횟수를 준수하여 서비스 실시 (주2회이상 실시할 수 없음/보강제외) ➔ 상담일지 별도첨부	회당 60분 이상	주 1회씩 월 4회																			
		1. 개인종합심리평가(필요시) 2. 가족상담 진행(필요시)	회당 60분	요청 시 (바우처 결제불가)																			
⑦ 서비스 실시지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강화군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항 목	내 용
<p>⑧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u>에서만 서비스 제공(추가확보시설 활용불가) ○ 서비스 집단 규모 1:1 (제공인력 1명당 1명의 이용자에 서비스 제공) ○ 사전·사후 검사 : 2종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7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u>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u>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등은 <u>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u>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u>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u>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세부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u>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u>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12 오감쑥쑥 서비스 (시·도 개발) / 사업코드 2905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아동 시기의 다양한 통합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바른인성 함양, 다양한 삶의 가치와 태도의 이해력을 길러 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한다.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58 537 500 615">소득</td> <td data-bbox="500 537 1437 615">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2019 소득기준 상향조정 </td> </tr> <tr> <td data-bbox="358 615 500 720">연령</td> <td data-bbox="500 615 1437 720"> 만 4세(2016년생)~만 6세(2014년생)이하 아동 (*연령:2014.01.01.~2016.12.31.) </td> </tr> <tr> <td data-bbox="358 720 500 867">★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data-bbox="500 720 1437 867">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오감쑥쑥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td> </tr> <tr> <td data-bbox="358 867 500 922">중복제한</td> <td data-bbox="500 867 1437 922"> 꼬마작가만들기 프로젝트, 발달재활서비스 </td> </tr> <tr> <td data-bbox="358 922 500 1058">유의사항</td> <td data-bbox="500 922 1437 1058">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2019 소득기준 상향조정	연령	만 4세(2016년생)~만 6세(2014년생)이하 아동 (*연령:2014.01.01.~2016.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오감쑥쑥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꼬마작가만들기 프로젝트, 발달재활서비스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2019 소득기준 상향조정										
연령	만 4세(2016년생)~만 6세(2014년생)이하 아동 (*연령:2014.01.01.~2016.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오감쑥쑥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꼬마작가만들기 프로젝트, 발달재활서비스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0 1350 542 1556">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td> <td data-bbox="542 1350 1458 1556">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r> <td data-bbox="370 1586 542 2006">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td> <td data-bbox="542 1586 1458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미술활동 : ①, ②, 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②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동화구연 : ①, ②, ③, ④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동화구연 자격증 소지자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③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④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정교사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미술활동 : ①, ②, 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②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동화구연 : ①, ②, ③, ④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동화구연 자격증 소지자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③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④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정교사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미술활동 : ①, ②, 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②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동화구연 : ①, ②, ③, ④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동화구연 자격증 소지자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③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④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정교사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항 목	내 용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p>▶ 월 13만원 (정부지원 60~80% / 본인부담 20~40%)</p> <table border="1" data-bbox="521 385 1477 585">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h>(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04,000원(80%)</td> <td>91,000원(70%)</td> <td>78,000원(6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6,000원(20%)</td> <td>39,000원(30%)</td> <td>52,000원(40%)</td> </tr> </tbody> </table> <p>* 2019년도부터 본인부담금 차등화 확대</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6,000원씩 / 2등급:22,750원씩 / 3등급:19,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6,500원씩 / 2등급:9,750원씩 / 3등급:13,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04,000원(80%)	91,000원(70%)	78,000원(60%)	본인부담금	26,000원(20%)	39,000원(30%)	52,000원(4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04,000원(80%)	91,000원(70%)	78,000원(60%)																		
본인부담금	26,000원(20%)	39,000원(30%)	52,000원(40%)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73 902 1466 1205">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서비스 내용 및 횟수</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 본 서비스</td> <td>사전사후검사</td> <td>자존감·사회성 등 검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r> <td>놀이지도</td> <td>통합 놀이 활동</td> <td>월 1회(40분)</td> </tr> <tr> <td>미술활동</td> <td>미술 교구를 이용한 활동</td> <td>월 1회(40분)</td> </tr> <tr> <td>동화구연</td> <td>동화 구연</td> <td>월 2회(40분)</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사전검사를 통한 이용자 특성 파악 ② 2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p>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	기 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자존감·사회성 등 검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놀이지도	통합 놀이 활동	월 1회(40분)	미술활동	미술 교구를 이용한 활동	월 1회(40분)	동화구연	동화 구연	월 2회(40분)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																		
기 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자존감·사회성 등 검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놀이지도	통합 놀이 활동	월 1회(40분)																		
	미술활동	미술 교구를 이용한 활동	월 1회(40분)																		
	동화구연	동화 구연	월 2회(40분)																		
⑦ 서비스 실시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강화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p> <p>○ 서비스 집단 규모 : 기본서비스 1:1 진행 -형제자매가 같이 신청한 경우 → 1:2 서비스 인정(회당 60분이상 제공) -쌍둥이+형제자매가 동시 신청한 경우 → 쌍둥이 1:2 서비스 인정(회당 60분이상)되나, 형제자매는 다른 시간에 40분 제공해야 함.</p> <p>○ 사전·사후 검사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세부 개입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13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1703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유아기 아동이 주 양육자와 함께 다양한 통합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감각인지, 사회정서, 신체운동, 의사소통 등 즐거운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의 뇌발달을 도와주며, 양육자와의 건강한 애착형성을 도와줌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한다.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소득</td> <td>기준중위소득 140%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선정기준</td> <td>만 2세(2018년생)~만 3세(2017년생)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아동연령:2017.01.01.~2018.12.3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복제한</td> <td>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토탈케어서비스(미추홀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td> <td> <input type="checkbox"/> 해당 서비스 이용권은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부여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선정기준	만 2세(2018년생)~만 3세(2017년생)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아동연령:2017.01.01.~2018.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토탈케어서비스(미추홀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서비스 이용권은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부여 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선정기준	만 2세(2018년생)~만 3세(2017년생)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아동연령:2017.01.01.~2018.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토탈케어서비스(미추홀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서비스 이용권은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부여 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서비스 대상이 유아 1인인 경우, 부모 중 1명이 신청하고 서비스에 참여 ※서비스 대상이 유아 2인인 경우, 부모 2명이 각각 신청하고 서비스에 참여 (서비스 대상이 유아 3인 이상이거나, 2인 이상인데 한부모가정인 경우, 조부모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p>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항 목	내 용												
	<p>제공인력 기준</p> <p>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p> <p>②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p> <p>★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유아체육, 아동놀이, 영유아발달 관련(2020년 변경)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p>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자격 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p>▶ 월 10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data-bbox="511 723 1469 872">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120%이하</th> <th>(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90,000원(90%)</td> <td>80,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0,000원(10%)</td> <td>20,000원(2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p> <p>[정부지원금] 1등급:22,500원씩 / 2등급:20,000원씩 산정</p> <p>[본인부담금] 1등급:2,500원씩 / 2등급:5,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p>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12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90,000원(90%)	80,000원(80%)	본인부담금	10,000원(10%)	20,000원(20%)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12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90,000원(90%)	80,000원(80%)											
본인부담금	10,000원(10%)	20,000원(20%)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57 1136 1469 1572">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 및 횟수</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 <p>사전사후검사 및 상담</p> <p>▶ 다음 ①, ②를 모두 제공한 후, 상담서비스 진행</p> <p>① 아동 사전사후검사 : 아동발달기초검사전지원 (Denver검사 등)</p> <p>② 부모 사전사후검사 : 양육스트레스검사 등</p> <p>▶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td> <td>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r> <td></td> <td> <p>통합놀이활동</p> <p>▶ 부모·유아가 함께하는 발달단계별 통합 놀이활동 및 부모상담(아동발달, 양육스트레스 등 관련) 제공</p> </td> <td>주 1회씩 월 4회 (회당 50분)</td> </tr> <tr> <td></td> <td> <p>양육자 자조모임</p> </td> <td>연 4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사전검사 실시(검사도구 : 양육스트레스 검사, 덴버검사 등 2종 필수)</p> <p>② 2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p> <p>③ 3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p>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p>사전사후검사 및 상담</p> <p>▶ 다음 ①, ②를 모두 제공한 후, 상담서비스 진행</p> <p>① 아동 사전사후검사 : 아동발달기초검사전지원 (Denver검사 등)</p> <p>② 부모 사전사후검사 : 양육스트레스검사 등</p> <p>▶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p>통합놀이활동</p> <p>▶ 부모·유아가 함께하는 발달단계별 통합 놀이활동 및 부모상담(아동발달, 양육스트레스 등 관련) 제공</p>	주 1회씩 월 4회 (회당 50분)		<p>양육자 자조모임</p>	연 4회 (바우처 결제불가)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p>사전사후검사 및 상담</p> <p>▶ 다음 ①, ②를 모두 제공한 후, 상담서비스 진행</p> <p>① 아동 사전사후검사 : 아동발달기초검사전지원 (Denver검사 등)</p> <p>② 부모 사전사후검사 : 양육스트레스검사 등</p> <p>▶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p>통합놀이활동</p> <p>▶ 부모·유아가 함께하는 발달단계별 통합 놀이활동 및 부모상담(아동발달, 양육스트레스 등 관련) 제공</p>	주 1회씩 월 4회 (회당 50분)											
	<p>양육자 자조모임</p>	연 4회 (바우처 결제불가)											
⑦ 서비스 실시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⑧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p> <p>-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추가확보시설 활용불가)</p> <p>○ 서비스 집단 규모 : 부모+영아 1팀 (이용권 신청부모 직접 참여)</p> <p>▪ 만2세는(2018년생) → 1:5</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세(2017년생) → 1:8 ※서비스 대상이 유아 1인인 경우, 부모 중 1명이 신청하고 서비스에 직접 참여 ※서비스 대상이 유아 2인인 경우, 부모 2명이 각각 신청하고 서비스에 직접 참여 (서비스 대상이 유아 3인 이상이거나, 2인 이상인데 한부모가정인 경우, 조부모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사전·사후 검사 (아동/부모 각 1종씩 총 2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14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1002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인지건강관리를 통해 치매 예방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함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소득 및 연령</td> <td>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 생)이상 노인 (*연령 : ~1955.12.31.) ②기초연금수급자 </td> </tr> <tr> <td>★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td> </tr> <tr> <td>중복제한</td> <td>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td> </tr> <tr> <td>유의사항</td> <td>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td> </tr> </table>	소득 및 연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 생)이상 노인 (*연령 : ~1955.12.31.) ②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및 연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 생)이상 노인 (*연령 : ~1955.12.31.) ②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tr> <td>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td> <td>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r> <td>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td> <td> 교육학, 사회복지학, 작업치료학, 미술관련학과, 간호학, 심리상담학 전문학사 이상 전공자이면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 노인인지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명시된 전공학과 이외 학과는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위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함. ▶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교육학, 사회복지학, 작업치료학, 미술관련학과, 간호학, 심리상담학 전문학사 이상 전공자이면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 노인인지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명시된 전공학과 이외 학과는 인정되지 않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위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함. ▶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교육학, 사회복지학, 작업치료학, 미술관련학과, 간호학, 심리상담학 전문학사 이상 전공자이면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 노인인지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명시된 전공학과 이외 학과는 인정되지 않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위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함. ▶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								

항 목	내 용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p>▶ 월 16만원 [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8,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2,000원씩 산정</p>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사전사후 검사	-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사전·사후 검사 실시 : 노인인지기능검사, 우울척도검사 2종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1:1 (바우처 결제불가)
		기본 서비스 서비스 제공 (1~4. 병행하여 회당 80분이상)	<p>1. 인지건강학습지 (회당 20분) -언어, 수학, 한문, 사고력, 기억일기, 추억하기, 손그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상 시 사용하지 않는 뇌를 자극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치매를 예방</p> <p>2. 심리지원서비스 (회당 20분) -노인의 심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욕구를 탐색하여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p> <p>3. 인지건강 뇌체조 (회당 10분) -심폐기능 향상하고 뇌로 가는 혈액을 증가시켜 뇌활성화를 돕는 인지 건강 뇌체조를 실시</p> <p>4. 인지건강 보드게임 (회당 30분) - 게임별 과제해결 과정을 통해 뇌의 영역들을 자극하여 인지기능향상 및 유지를 도움. 가족 및 집단 활동을 통해 놀이문화 형성</p>	월 8회 (회당 80분)
			▶ 작품모음 전시회 : 연 1회 ※ 전시회 실시 후, 별도 증빙서류 관리 필수(일지 및 사진자료 등) ('17년 8월 추가)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사전검사(총 2종) 및 욕구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 ② 2단계 : 월별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종결 및 사후검사 실시 (총 2종)		
⑦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동구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추가확보시설 활용불가)</p> <p>○ 서비스 집단규모 1:5 이하 (사전사후검사는 1:1로 실시)</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노인인지기능검사, 우울척도검사 총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1:1로 실시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 2종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에 2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장소, 제공인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작품모음 전시회(연 1회)도 실시 후, 일지 및 사진자료 등 별도 증빙서류 관리 필수 ('17년 8월 추가)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u>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u>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15 나를 찾는 5060(시·도 개발) / 사업코드 1902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악기연주 및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가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2 470 479 569">소득 및 연령</td> <td data-bbox="479 470 1442 569">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만 50세(1970년생)이상 ~ 만 64세(1956년생) 이하인 자 (*연령: 1956.01.01. ~ 1970.12.31)</td> </tr> <tr> <td data-bbox="332 569 479 723">★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data-bbox="479 569 1442 723">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나를 찾는 5060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td> </tr> <tr> <td data-bbox="332 723 479 828">유의사항</td> <td data-bbox="479 723 1442 828">□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만 50세(1970년생)이상 ~ 만 64세(1956년생) 이하인 자 (*연령: 1956.01.01. ~ 1970.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나를 찾는 5060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만 50세(1970년생)이상 ~ 만 64세(1956년생) 이하인 자 (*연령: 1956.01.01. ~ 1970.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나를 찾는 5060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2 1063 521 1368">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21 1063 1433 1368">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트럼펫, 색소폰, 드럼 중 2가지 이상 악기 구비 (이용자 모집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 구비 필수) </td> </tr> <tr> <td data-bbox="342 1391 521 2045">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21 1391 1433 2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검사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②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③ 심리, 상담, 음악·미술·예술재활, 가족·사회복지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서, 학위취득 이후 중장년층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 ④ (강화군에 해당) 심리, 상담, 음악·미술·예술재활, 가족·사회복지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로서, 학위취득 이후 중장년층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③과 ④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식(음악)교육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트럼펫, 색소폰, 드럼 중 2가지 이상 악기 구비 (이용자 모집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검사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②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③ 심리, 상담, 음악·미술·예술재활, 가족·사회복지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서, 학위취득 이후 중장년층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 ④ (강화군에 해당) 심리, 상담, 음악·미술·예술재활, 가족·사회복지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로서, 학위취득 이후 중장년층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③과 ④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식(음악)교육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트럼펫, 색소폰, 드럼 중 2가지 이상 악기 구비 (이용자 모집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검사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②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③ 심리, 상담, 음악·미술·예술재활, 가족·사회복지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서, 학위취득 이후 중장년층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 ④ (강화군에 해당) 심리, 상담, 음악·미술·예술재활, 가족·사회복지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로서, 학위취득 이후 중장년층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③과 ④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식(음악)교육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 						

항 목	내 용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p>▶ 월 16만원 (정부지원 70~90% / 본인부담 10~30%)</p> <table border="1" data-bbox="495 378 1437 539">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h>(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44,000원(90%)</td> <td>128,000원(80%)</td> <td>112,000원(7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6,000원(10%)</td> <td>32,000원(20%)</td> <td>48,000원(3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18,000원씩 / 2등급:16,000원씩 / 3등급:14,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2,000원씩 / 2등급:4,000원씩 / 3등급:6,000원씩 산정</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p>사전사후검사 :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p>음악이론 및 실기 : 트럼펫, 색소폰, 드럼 중 택 1하여 개인 또는 그룹지도</p> <p>정서지원프로그램 - 음악·예술재활 프로그램 - 나의 삶 돌아보기,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 등 자아성찰 프로그램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관계형성 및 심화 활동 실시</p> <p>1. 함께하는 악기연주(합주)회 실시 (반기별 1회) : 이용자 개인 또는 집단이 직접 참여하는 악기연주(합주)회 실시 2. <u>이용자별 사례회의 실시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월 1회)</u></p>	<p>연 2회 집단규모 1:1</p> <p>주 1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5이하</p> <p>주 1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5이하</p> <p>※ 1~2 모두 시행해야하며, 제공기록지 기록 및 별도 증빙서류관리 필수 (바우처 결제 불가)</p>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사전검사를 통한 이용자 욕구사정 및 주 호소문제 파악 ② 음악이론 및 실기, 정서지원프로그램 각각 실시 - 연주(합주)회, 사례회의 및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 병행 ③ 종료 시 사후검사 실시하고 종결상담 및 서비스 제공 마무리</p>															
⑦ 서비스 실시지역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p> <p>○ 서비스 집단규모는 1:5이하 ※ <u>사전사후검사는 1:1로 진행해야 함에 유의</u></p> <p>○ 사전·사후 검사 (집단규모 1:1로 진행)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기관 보관</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2회기 중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2회기 중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약기연주(합주)회, 월별 서비스제공보고서 별도 구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기연주(합주)회 : 참석자, 활동내용, 활동사진 등 자율서식 활용하여 작성 - 월별 서비스제공보고서 : 사례회의 후 자율서식 활용하여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 배부하고, 1부는 제공기관 보관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이론 및 실기(2종 이상), 정서지원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매뉴얼 구성 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색소폰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 트럼펫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 정서지원프로그램 매뉴얼 1부</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16 섬마을 행복나눔 서비스 (사·군·구 자체) / 사업코드 2901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아동에게 클래식 악기레슨과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6 523 522 613">소득 및 연령</td> <td data-bbox="522 523 1466 613">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7세(2013년생)~만 18세(2002년생) 이하 아동 (*연령:2002.01.01.~2013.12.31.)</td> </tr> </table>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7세(2013년생)~만 18세(2002년생) 이하 아동 (*연령:2002.01.01.~2013.12.31.)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7세(2013년생)~만 18세(2002년생) 이하 아동 (*연령:2002.01.01.~2013.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섬마을 행복나눔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6 1067 899 1235">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899 1067 1466 1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d> </tr> <tr> <td data-bbox="376 1235 899 1294">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td> <td data-bbox="899 1235 1466 1294">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td> </tr> </table>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 되어야 함.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6 1496 558 1754">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58 1496 1466 1882"> 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⑩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div>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⑩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div>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⑩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div>			

(다음페이지 계속)

항 목	내 용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p>○ 정서프로그램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전공과 관련한 임상경력 300시간이상 보유자도 인정</p> <p>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은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p>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클래식악기교육 제공인력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 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p>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p>▶ 월 22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data-bbox="544 1159 1437 1320">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200,000원(90%)</td> <td>180,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000원(10%)</td> <td>40,000원(2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5,000원씩 / 2등급:22,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2,500원씩 / 2등급:5,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1회 재판정 가능 / 최대 24개월까지 지원)</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200,000원(90%)	18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200,000원(90%)	18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81 1572 1453 1894">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항목</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 서비스</td> <td>사전사후검사</td> <td>아동과 부모 각각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연 2회</td> </tr> <tr> <td>클래식 악기교육</td> <td>클래식 이론 및 바이올린·클라리넷·플룻 등 악기 그룹지도</td> <td>주 1회 (60분)</td> </tr> <tr> <td>가족정서프로그램 및 상담</td> <td>▷아동 :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및 놀이 ▷부모 :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주 1회 (60분)</td> </tr> </tbody> </table> <p>1. 문화프로그램 :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운영(월 1회 /120분) 2. 청소년 오케스트라 : 아동 대상 오케스트라 구성·운영(연 중) 3. 행복음악회 : 제공인력과 이용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연 1회) 4. 이용자별 사례회의 및 보호자에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 (월 1회)</p> <p>※ 1~4 모두 시행해야하며, 제공기록지 기록 및 별도 증빙서</p>	구분	서비스 항목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아동과 부모 각각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클래식 악기교육	클래식 이론 및 바이올린·클라리넷·플룻 등 악기 그룹지도	주 1회 (60분)	가족정서프로그램 및 상담	▷아동 :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및 놀이 ▷부모 :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 상담일지 별도첨부	주 1회 (60분)
구분	서비스 항목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아동과 부모 각각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클래식 악기교육	클래식 이론 및 바이올린·클라리넷·플룻 등 악기 그룹지도	주 1회 (60분)												
	가족정서프로그램 및 상담	▷아동 :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및 놀이 ▷부모 :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 상담일지 별도첨부	주 1회 (60분)												

항 목	내 용
	<div style="text-align: right;"> 관련 필수 (바우처 결제불가) </div>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아동과 부모 각각에 대한 사전검사 실시 및 계획수립 ② 2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③ 3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안내 ④ 4단계 : 사후검사 실시(아동, 부모) 및 종결
⑦ 서비스 실시역	<p>용진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형태 : 집단활동형으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p> <p>▷ 필수 명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 <p>▷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p> <p>▷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p> <p>▷ 서비스 진행장소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p> </div> <p>○ 서비스 집단규모 1:4 이하</p> <p>※ 단, 이용자는 초·중·고등학생별로 그룹화하여 진행</p> <p>○ 사전·사후 검사 : 아동과 부모 모두에 대해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검사도구 : 아동의 심리·성격, 정서 순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하여 실시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 - 매월 클래식악기 제공인력과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간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보고서’ 작성→1부는 보호자에 제공, 1부는 이용자 파일에 보관(점검 시 확인사항) -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오케스트라운영, 행복음악회 실시 후 별도 증빙자료 작성하여 구비

항 목	내 용
	<p>(점검 시 확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정서순화 및 음악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u>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u>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17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시·군·구 자체) / 사업코드 1001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노인의 신체·정신건강·사회참여증진을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하고자 함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소득 및 연령</td> <td> <p>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생) 이상인 자 (*연령:~1955.12.31.)</p> <p>② 기초연금수급자</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선정기준</td> <td> <p>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이 가능한 자</p> <p>②노인자살위험검사(자살생각척도검사 등)를 통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검사결과지 동봉)</p> <p>③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사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자</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p>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복제한</td> <td>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td> <td> <p><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u>정신의료기관</u> 입원자는 절대 불가함.</p> </td> </tr> </table>	소득 및 연령	<p>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생) 이상인 자 (*연령:~1955.12.31.)</p> <p>② 기초연금수급자</p>	선정기준	<p>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이 가능한 자</p> <p>②노인자살위험검사(자살생각척도검사 등)를 통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검사결과지 동봉)</p> <p>③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사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자</p>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p>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중복제한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u>정신의료기관</u> 입원자는 절대 불가함.</p>
소득 및 연령	<p>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생) 이상인 자 (*연령:~1955.12.31.)</p> <p>② 기초연금수급자</p>										
선정기준	<p>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이 가능한 자</p> <p>②노인자살위험검사(자살생각척도검사 등)를 통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검사결과지 동봉)</p> <p>③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사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자</p>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p>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중복제한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u>정신의료기관</u> 입원자는 절대 불가함.</p>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p> <p>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p> <p>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p> <p>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p> <p>※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p> <p>⑤-1.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p> <p>⑤-2.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노인자살위험검사 결과지</p> <p>⑤-3.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사의 추천서</p> <p>➡ ⑤-1, ⑤-2, ⑤-3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p> <p>※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2019 변경)</p>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p>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p>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p>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항 목	내 용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5 374 548 596">제공인력 기준</td> <td data-bbox="548 374 1466 596"> <p>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p> <p>②"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p> <p>③"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p> <p>④"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p> </td> </tr> </table>	제공인력 기준	<p>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p> <p>②"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p> <p>③"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p> <p>④"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p>														
제공인력 기준	<p>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p> <p>②"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p> <p>③"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p> <p>④"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p>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5 617 509 732">서비스 가격</td> <td data-bbox="509 617 1466 732"> <p>▶ 월 14만원</p> <p>[정부지원금] 126,000원</p> <p>[본인부담금] 14,000원</p> </td> </tr> <tr> <td data-bbox="375 732 509 847"></td> <td data-bbox="509 732 1466 847"> <p>▶ 회차별 금액</p> <p>[정부지원금] 31,500원씩 산정</p> <p>[본인부담금] 3,500원씩 산정</p> </td> </tr> <tr> <td data-bbox="375 847 509 920">이용자별 제공기간</td> <td data-bbox="509 847 1466 920">12개월</td> </tr> </table>	서비스 가격	<p>▶ 월 14만원</p> <p>[정부지원금] 126,000원</p> <p>[본인부담금] 14,000원</p>		<p>▶ 회차별 금액</p> <p>[정부지원금] 31,500원씩 산정</p> <p>[본인부담금] 3,500원씩 산정</p>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가격	<p>▶ 월 14만원</p> <p>[정부지원금] 126,000원</p> <p>[본인부담금] 14,000원</p>																
	<p>▶ 회차별 금액</p> <p>[정부지원금] 31,500원씩 산정</p> <p>[본인부담금] 3,500원씩 산정</p>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p>- 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해 신체·정서·건강분야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80 1063 461 1120">구 분</th> <th data-bbox="461 1063 1192 1120">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192 1063 1312 1120">서비스 횟수</th> <th data-bbox="1312 1063 1461 112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80 1120 461 1425">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461 1120 1192 1425"> <p>▶사전사후 검사</p> <p>▷심리정서 1종 + 신체평가 1종→ 총 2종 실시</p> <p>-심리정서 : 우울(GDSSF-K), 자살(SSI), 사회적응생활만족척도 중 택 1</p> <p>-신체평가 : Inbody, ADL 중 택 1</p> <p>▶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td> <td data-bbox="1192 1120 1312 1425">연 2회</td> <td data-bbox="1312 1120 1461 1425">분야별 1종 (총 2종) 의무 실시</td> </tr> <tr> <td data-bbox="380 1425 461 1540"></td> <td data-bbox="461 1425 1192 1540"> <p>정서지원 서비스</p> <p>- 정서지원서비스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p> <p>▶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야별서비스와 일괄작성)</p> </td> <td data-bbox="1192 1425 1312 1540">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td> <td data-bbox="1312 1425 1461 1540">재가방문형</td> </tr> <tr> <td data-bbox="380 1540 461 1540"></td> <td data-bbox="461 1540 1192 1540"> <p>분야별서비스 성취도평가</p> <p>- 자살예방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대인관계증진서비스 중 이용자가 택 2하여 제공</p> <p>▶ 상담일지 별도첨부 (정서지원서비스와 일괄작성)</p> </td> <td data-bbox="1192 1540 1312 1540">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td> <td data-bbox="1312 1540 1461 1540">기관방문형</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서비스 대상자 심리정서·신체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검사(총 2종)</p> <p>② 2단계 : 정서지원서비스 및 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선택하여 제공</p> <p>③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 사후검사(총 2종)</p>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비 고	기본 서비스	<p>▶사전사후 검사</p> <p>▷심리정서 1종 + 신체평가 1종→ 총 2종 실시</p> <p>-심리정서 : 우울(GDSSF-K), 자살(SSI), 사회적응생활만족척도 중 택 1</p> <p>-신체평가 : Inbody, ADL 중 택 1</p> <p>▶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연 2회	분야별 1종 (총 2종) 의무 실시		<p>정서지원 서비스</p> <p>- 정서지원서비스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p> <p>▶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야별서비스와 일괄작성)</p>	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	재가방문형		<p>분야별서비스 성취도평가</p> <p>- 자살예방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대인관계증진서비스 중 이용자가 택 2하여 제공</p> <p>▶ 상담일지 별도첨부 (정서지원서비스와 일괄작성)</p>	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	기관방문형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비 고														
기본 서비스	<p>▶사전사후 검사</p> <p>▷심리정서 1종 + 신체평가 1종→ 총 2종 실시</p> <p>-심리정서 : 우울(GDSSF-K), 자살(SSI), 사회적응생활만족척도 중 택 1</p> <p>-신체평가 : Inbody, ADL 중 택 1</p> <p>▶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연 2회	분야별 1종 (총 2종) 의무 실시														
	<p>정서지원 서비스</p> <p>- 정서지원서비스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p> <p>▶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야별서비스와 일괄작성)</p>	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	재가방문형														
	<p>분야별서비스 성취도평가</p> <p>- 자살예방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대인관계증진서비스 중 이용자가 택 2하여 제공</p> <p>▶ 상담일지 별도첨부 (정서지원서비스와 일괄작성)</p>	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	기관방문형														
⑦ 서비스 실시역	<p>미추홀구</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정서지원)+기관방문형(분야별서비스)</p> <p>○ 서비스 집단규모 원칙은 1:1임 (대인관계증진서비스는 3개월간 준수) (단, 대인관계증진서비스(3개월 이후) 및 문화여가서비스의 경우 집단활동형(1:8)도 선택적 가능)</p>																

항 목	내 용
-----	-----

- 사전·사후 검사 : 총 2종 실시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일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일 실시
 - 검사도구 : 심리정서분야 택 1, 신체평가분야 택 1
 -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

○ ‘문화여가서비스’ 진행 시 제공기관 준수사항

체험활동 시 안전관리 준수사항			
	항 목	구비서류	필수사항
1	여행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임대계약서 ▷ 배상/상해보험증명서 ▷ 차량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 차량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임대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의 안전관리책임 명시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명시 ▷ 중간알선업자(체험전문업체 등) 계약금지
2	제공기관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활동 개요 및 일지 ▷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사전 안전교육일지 ▷ 비상연락망 ▷ 보호자동의서 (사업별서식제25호) ▷ 여행자보험서류 ▷ 체험시설 안전확인 사항 기록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제공인력 대상 사전 안전교육 필수 ▷ 체험활동 진행 전, 보호자동의서 사전 구비 ※ 해당 체험활동에 대한 상세사항 안내 필수 ▷ 여행자보험서류에 참석자 명단 명시 ▷ 보험가입 시,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유의 ▷ 제공기관 자체 차량 운행 시에도 차량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차량등록증 구비 필수 ※ 상시로 자체 차량 운행 시, 등록 군구에 사전 보고 필수(제출서류 동일)
<p>➔ 위 서류들은 최초 1회가 아닌, 매회차별로 구비해둬야 함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별도 파일 관리 필요</p>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대상자에 대한 상태·평가 등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p style="color: red; margin-top: 10px;">○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p>
<p>⑨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대인/대물 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18 도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예술교육서비스 (사군구 공동 / 사업코드 1702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문화에 소외된 도시지역 36개월 미만 영아의 정서발달 지원 및 주 양육자와의 애착형성, 놀이를 통한 부모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서비스를 실행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경감 및 가족관계 강화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 및 연령</td> <td>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12개월 ~ 만 4세(2016년생) 이하 영유아 (*연령 : 2016.01.01.~ 생후 12개월) * 2019년부터 영유아에 이용권 부여 및 최소 연령기준 상향조정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도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예술교육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td> <td> <input type="checkbox"/> 해당 서비스 이용권은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부여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td> </tr> </table>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12개월 ~ 만 4세(2016년생) 이하 영유아 (*연령 : 2016.01.01.~ 생후 12개월) * 2019년부터 영유아에 이용권 부여 및 최소 연령기준 상향조정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도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예술교육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서비스 이용권은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부여 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12개월 ~ 만 4세(2016년생) 이하 영유아 (*연령 : 2016.01.01.~ 생후 12개월) * 2019년부터 영유아에 이용권 부여 및 최소 연령기준 상향조정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도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예술교육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서비스 이용권은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부여 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 2019년부터 웅진군, 강화군 시설/장비 기준 개별 규정(제공인력 기준은 동일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웅진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div>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다음페이지에 계속)</p>	[웅진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div>				
[웅진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div>						

항 목	내 용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3 339 544 585">[강화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44 339 1469 585">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거나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r> <td data-bbox="373 585 544 906">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44 585 1469 9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포먼스놀이/부모교육세미나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아교육법" 제 22조 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영유아 대상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td> </tr> <tr> <td data-bbox="373 906 544 1377">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44 906 1469 13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373 1377 1469 1480"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div>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373 1480 1469 1538"> ▶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 </td> </tr> </table>	[강화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거나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포먼스놀이/부모교육세미나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아교육법" 제 22조 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영유아 대상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div>		▶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	
[강화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거나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포먼스놀이/부모교육세미나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아교육법" 제 22조 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영유아 대상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div>											
▶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											
⑤ 서비스 가격/제공기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3 1549 511 1928">서비스 가격</td> <td data-bbox="511 1549 1469 1928"> ▶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9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 강화군 22,500원씩 산정(월 4회) - 옹진군 45,000원씩 산정(월 2회) [본인부담금] - 강화군 2,500원씩 산정(월 4회) - 옹진군 5,000원씩 산정(월 2회) </td> </tr> <tr> <td data-bbox="373 1928 511 2008">이용자별 제공기간</td> <td data-bbox="511 1928 1469 2008">12개월</td> </tr> </table>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9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 강화군 22,500원씩 산정(월 4회) - 옹진군 45,000원씩 산정(월 2회) [본인부담금] - 강화군 2,500원씩 산정(월 4회) - 옹진군 5,000원씩 산정(월 2회)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9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 강화군 22,500원씩 산정(월 4회) - 옹진군 45,000원씩 산정(월 2회) [본인부담금] - 강화군 2,500원씩 산정(월 4회) - 옹진군 5,000원씩 산정(월 2회)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항 목	내 용														
<p>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 2019년부터 옹진군, 강화군 '퍼포먼스놀이' 서비스 제공시간/횟수 개별 규정</p> <table border="1" data-bbox="373 436 1469 838"> <thead> <tr> <th data-bbox="373 436 454 482">구분</th> <th data-bbox="454 436 1071 482">서비스 내용</th> <th colspan="2" data-bbox="1071 436 1469 482">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3 482 454 838" rowspan="3">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454 482 1071 585"> ▷ 사전사후검사 :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td> <td colspan="2" data-bbox="1071 482 1469 585">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r> <td data-bbox="454 585 1071 734"> ▷ 퍼포먼스놀이 · 부모·유아가 함께하는 음악놀이, 신체활동, 오감 자극 미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놀이 교육 → 상담일지 별도첨부 </td> <td data-bbox="1071 585 1266 734">[옹진군] 월 2회 (회당80분)</td> <td data-bbox="1266 585 1469 734">[강화군] 주 1회씩 월 4회 (회당 40분)</td> </tr> <tr> <td data-bbox="454 734 1071 838"> ▷ 예술교육, 가족정서지원, 부모교육 세미나 </td> <td colspan="2" data-bbox="1071 734 1469 838">각 분기별 1회 (90분)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사전검사 ② 2단계 : 음악놀이 및 퍼포먼스놀이 프로그램 실시 ③ 3단계 : 예술교육, 가족정서지원, 부모교육 세미나 분기별 실시 ④ 4단계 : 서비스 만족도조사 실시, 사후검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 퍼포먼스놀이 · 부모·유아가 함께하는 음악놀이, 신체활동, 오감 자극 미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놀이 교육 → 상담일지 별도첨부	[옹진군] 월 2회 (회당80분)	[강화군] 주 1회씩 월 4회 (회당 40분)	▷ 예술교육, 가족정서지원, 부모교육 세미나	각 분기별 1회 (90분) (바우처 결제불가)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 퍼포먼스놀이 · 부모·유아가 함께하는 음악놀이, 신체활동, 오감 자극 미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놀이 교육 → 상담일지 별도첨부	[옹진군] 월 2회 (회당80분)	[강화군] 주 1회씩 월 4회 (회당 40분)												
	▷ 예술교육, 가족정서지원, 부모교육 세미나	각 분기별 1회 (90분) (바우처 결제불가)													
<p>⑦ 서비스 실시역</p>	<p>옹진군, 강화군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p>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p>	<p>○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p> <p>○ 서비스 집단규모는 1:8팀 이하(영아와 부모 2인 1팀 구성) ※ 자녀가 2인 이상이면서 이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모 1명이 동행 가능 (2019년 변경)</p> <p>○ 사전·사후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 <p>○ 결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 ○ 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용진군 해당] 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 제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p> <p>▷필수 명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 <p>▷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p> <p>▷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p> <p>▷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p> </div>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19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1302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청소년기 충분한 신체활동 및 균형적인 영양제공, 학교생활 유연성관리를 매개로 활발한 신체 및 두뇌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을 경감시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과 자아존중감을 증진	
②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만 6세 이상(2014년생)~만 15세(2005년생) 이하의 초·중학교 재학생 (*연령:2005.01.01.~2014.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5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⑥초·중학교 재학생 :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2020년 삭제)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 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69.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69.3㎡이상이어야 함.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항 목	내 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제공인력 기준</td> <td> <p>다음 ①,②,③,④,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p> <p>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p> <p>③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p> <p>④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p> <p>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체육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td> </tr> </table>	제공인력 기준	<p>다음 ①,②,③,④,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p> <p>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p> <p>③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p> <p>④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p> <p>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체육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제공인력 기준	<p>다음 ①,②,③,④,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p> <p>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p> <p>③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p> <p>④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p> <p>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체육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p>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rowspan="3"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서비스 가격</td> <td colspan="3">▶ 월 15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td> </tr>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부지원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135,000원(9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00원(8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원(1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20%)</td> <td></td> </tr> <tr> <td></td> <td colspan="3">▶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6,750원씩 / 2등급:6,000원씩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750원씩 / 2등급:1,500원씩 산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자별 제공기간</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12개월</td> </tr> </table>	서비스 가격	▶ 월 15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35,000원(90%)	120,000원(80%)	본인부담금	15,000원(10%)	30,000원(20%)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6,750원씩 / 2등급:6,000원씩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750원씩 / 2등급:1,5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가격	▶ 월 15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35,000원(90%)	120,000원(80%)																				
본인부담금	15,000원(10%)	30,000원(20%)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6,750원씩 / 2등급:6,000원씩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750원씩 / 2등급:1,5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p>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7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기본 서비스</td> <td> ▷사전사후검사 : 개별운동능력검사, 체성분검사, 학교적응유연성검사, 자아존중감척도검사, 영양지수(NQ검사) (총 5종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r> <td> ▷아침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회당 30분) ▷아침영양제공(회당 15분) </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5회 (회당 45분)</td> </tr> <tr> <td>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기록지 기록 필수) - 전화, 상담,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 월별 서비스제공 보고서(가정통신문) 배부 </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사전검사 총 5종 실시 ② 2단계 : 기본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매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내용 전달(보고서, 가정통신문 등) ④ 4단계 : 사후검사(총 5종)를 통한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 개별운동능력검사, 체성분검사, 학교적응유연성검사, 자아존중감척도검사, 영양지수(NQ검사) (총 5종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아침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회당 30분) ▷아침영양제공(회당 15분)	주 5회 (회당 45분)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기록지 기록 필수) - 전화, 상담,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 월별 서비스제공 보고서(가정통신문) 배부	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 개별운동능력검사, 체성분검사, 학교적응유연성검사, 자아존중감척도검사, 영양지수(NQ검사) (총 5종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아침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회당 30분) ▷아침영양제공(회당 15분)	주 5회 (회당 45분)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기록지 기록 필수) - 전화, 상담,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 월별 서비스제공 보고서(가정통신문) 배부	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																					
<p>⑦ 서비스 실시역</p>	<p>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p>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p>	<p>○ 서비스형태 : 집단활동형으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집단규모 1:20 이하 ○ 사전·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검사도구 : 개별운동능력검사, 체성분검사, 학교적응유연성검사, 자아존중감척도검사, 영양지수(NQ지수)검사 총 5종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제공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부모교육 및 상담 내용 반드시 제공기록지에 작성 : 실시방법, 제공내용 등 구체적 기록 ○ 보고서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월별 서비스 제공 내용 전달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 ○ 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보상) - 서비스 제공장소(학교)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명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 ▷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 ▷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 ▷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20 도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서비스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1901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여가문화가 상대적으로 소외지역인 도시지역 어르신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정서지원하고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소득 및 연령</td> <td>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 생)이상 노인 (*연령 : ~1955.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td> </tr> <tr> <td>★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도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td> </tr> <tr> <td>유의사항</td> <td>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td> </tr> </table>	소득 및 연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의 만 65세(1955년 생)이상 노인 (*연령 : ~1955.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도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및 연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의 만 65세(1955년 생)이상 노인 (*연령 : ~1955.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도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p>※ 2019년부터 웅진군, 강화군 시설/장비 기준 개별 규정(제공인력 기준은 동일함)</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웅진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102.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r> <td> [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경로당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활용가능 </td> </tr> </table>	[웅진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102.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경로당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활용가능			
	[웅진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102.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경로당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활용가능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강화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102.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102.3㎡이상이어야 함.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td> </tr> </table>	[강화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102.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102.3㎡이상이어야 함.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강화군]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102.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102.3㎡이상이어야 함.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항 목	내 용																											
④ 제공기관 및 인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공통]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이상인 자 ○ 여가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레크레이션지도자 자격 소지자 ③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④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전문자격(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 영양보호사) 소지자 ② 보건복지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 이수한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관리 또는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사례관리 제공인력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2020년 삭제 </td> </tr> </table>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공통]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이상인 자 ○ 여가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레크레이션지도자 자격 소지자 ③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④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전문자격(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 영양보호사) 소지자 ② 보건복지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 이수한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관리 또는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사례관리 제공인력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2020년 삭제 																									
[공통]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이상인 자 ○ 여가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레크레이션지도자 자격 소지자 ③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④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전문자격(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 영양보호사) 소지자 ② 보건복지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 이수한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관리 또는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사례관리 제공인력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2020년 삭제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서비스 가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5만원 [정부지원금] 14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11회기:11,660원씩 / 12회기:11,74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11회기:800원씩 / 12회기:1,200원씩 산정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자별 제공기간</td> <td>12개월</td> </tr> </table>	서비스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5만원 [정부지원금] 14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11회기:11,660원씩 / 12회기:11,74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11회기:800원씩 / 12회기:1,2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5만원 [정부지원금] 14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11회기:11,660원씩 / 12회기:11,74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11회기:800원씩 / 12회기:1,2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서비스 구분</th> <th>서비스종류</th> <th>서비스내용</th> <th>서비스 제공횟수</th> <th>집단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기본서비스 (주 3회씩 월 12회)</td> <td>사전사후 검사</td> <td>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d>1:1</td> </tr> <tr> <td>심리지원</td> <td>음악, 미술, 놀이 등 예술활동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td> <td>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td> <td>1:10이하</td> </tr> <tr> <td>여가프로그램</td> <td>노래교실, 쉬위댄스(스트레칭)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td> <td>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td> <td>1:30이하</td> </tr> <tr> <td>건강관리</td> <td>건강증진서비스, 건강체크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td> <td>주 1회씩 월 4회 (회당30분이상)</td> <td>1:10이하</td> </tr> <tr> <td colspan="5">사례관리 : 개인별 상담 및 서비스 연계(요청 시 또는 필요시) -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서비스 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횟수	집단규모	기본서비스 (주 3회씩 월 12회)	사전사후 검사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1:1	심리지원	음악, 미술, 놀이 등 예술활동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1:10이하	여가프로그램	노래교실, 쉬위댄스(스트레칭)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1:30이하	건강관리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체크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주 1회씩 월 4회 (회당30분이상)	1:10이하	사례관리 : 개인별 상담 및 서비스 연계(요청 시 또는 필요시) - 바우처 결제불가				
서비스 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횟수	집단규모																								
기본서비스 (주 3회씩 월 12회)	사전사후 검사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1:1																								
	심리지원	음악, 미술, 놀이 등 예술활동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1:10이하																								
	여가프로그램	노래교실, 쉬위댄스(스트레칭)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1:30이하																								
	건강관리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체크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주 1회씩 월 4회 (회당30분이상)	1:10이하																								
사례관리 : 개인별 상담 및 서비스 연계(요청 시 또는 필요시) - 바우처 결제불가																												

항 목	내 용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검사 실시</p> <p>② 2단계 : 심리지원, 여가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 제공</p> <p>③ 3단계 : 사후검사 실시 및 종결</p>
⑦ 서비스 실시역	<p>용진군, 강화군</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p> <p>* 용진군만 경로당을 추가확보시설로 허용함.</p> <p>○ 서비스 집단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지원서비스 1:10 이하 - 여가프로그램 1:30 이하 - 건강관리프로그램 1:10 이하 <p>○ 사전·사후 검사 (1:1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보호자 전달사항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 <p>○ 결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p>○ 보강 실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p> <p>○ 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p>
⑨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p>○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대인/대물 보상) <p>○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21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 (시·군·구 공동) / 사업코드 2906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문학적 표현, 논리적 언어표현과 기획능력 향상 및 정서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63 489 505 576">소득 및 연령</td> <td data-bbox="505 489 1481 576">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만 4세(2016년생)~만 12세(2008년생) 이하인 아동 (*연령:2008.01.01.~2016.12.31.)</td> </tr> <tr> <td data-bbox="363 576 505 743">★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data-bbox="505 576 1481 743">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td> </tr> <tr> <td data-bbox="363 743 505 789">중복제한</td> <td data-bbox="505 743 1481 789">오감쑥쑥서비스</td> </tr> <tr> <td data-bbox="363 789 505 900">유의사항</td> <td data-bbox="505 789 1481 900">□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만 4세(2016년생)~만 12세(2008년생) 이하인 아동 (*연령:2008.01.01.~2016.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오감쑥쑥서비스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만 4세(2016년생)~만 12세(2008년생) 이하인 아동 (*연령:2008.01.01.~2016.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오감쑥쑥서비스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p>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p>※ 중구, 동구 시설/장비 기준 상이함. (제공인력 기준은 동일함)</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0 1265 545 1536">[중구]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45 1265 1455 1536">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r> <td data-bbox="370 1563 545 1986">[동구]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45 1563 1455 1986">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학원을 제외한 시설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활용가능 </div> </td> </tr> </table>	[중구]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동구]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학원을 제외한 시설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활용가능 </div>				
[중구]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동구]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학원을 제외한 시설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활용가능 </div>								

(다음페이지 계속)

항 목	내 용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공통] 제공인력 기준</p> <p>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초·중·등·교육법 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1조에 의한 보육교사</p> <p>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p> <p>③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한 평생교육사</p> <p>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독서지도사</p> <p>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미술지도사</p> <p>⑥ 미술관련(시각디자인, 응용미술, 조형예술) 전공자로 다음 중 한가지를 충족한 자</p> <p>㉠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p> <p>㉢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이 1개월 이상인 자</p> <p>*경력은 학위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p>▶ 월 13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data-bbox="519 1067 1388 1228">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17,000원(90%)</td> <td>104,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3,000원(10%)</td> <td>26,000원(2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p> <p>[정부지원금] 1등급:29,250원씩 / 2등급:26,000원씩 산정</p> <p>[본인부담금] 1등급:3,250원씩 / 2등급:6,5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p>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17,000원(90%)	104,000원(80%)	본인부담금	13,000원(10%)	26,000원(20%)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17,000원(90%)	104,000원(80%)																			
본인부담금	13,000원(10%)	26,000원(20%)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65 1457 1469 203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서비스 내용</th> <th colspan="2">서비스횟수/집단규모</th> </tr> <tr> <th>미취학아동</th> <th>초등학생</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 서비스</td> <td>○ 사전사후검사 : 증상 파악을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총 2종 실시) - 읽기능력검사(자체개발도구) - Rosenberg 자존감척도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 colspan="2">연 2회 1:1 실시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r> <td>* 1 ~ 3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td> <td></td> </tr> <tr> <td>1. 이야기 캐기(월 1회) - 책 읽기, 바꿔읽기, 상상하며 읽기 기법 등을 활용한 이야기 소재 발견하기 2. 이야기 굴리기(월 2회) - 연극, 만들기, 그리기 등 매체와 활동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 3. 이야기 쌓기(월 1회) - 이야기 굴리기를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소재들을 책이나 공연,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발표</td> <td>주1회씩 월4회 (회당40분)</td> <td>주1회씩 월4회 (회당80분)</td> </tr> <tr> <td></td> <td>▶ 활동내용 중 하나의 스토리북을 선정하여 나만의 책 출판식, 꼬마작가들의 전시회</td> <td colspan="2">연 1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집단규모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기본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증상 파악을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총 2종 실시) - 읽기능력검사(자체개발도구) - Rosenberg 자존감척도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1:1 실시 (바우처 결제불가)		* 1 ~ 3 상담일지 별도첨부			1. 이야기 캐기(월 1회) - 책 읽기, 바꿔읽기, 상상하며 읽기 기법 등을 활용한 이야기 소재 발견하기 2. 이야기 굴리기(월 2회) - 연극, 만들기, 그리기 등 매체와 활동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 3. 이야기 쌓기(월 1회) - 이야기 굴리기를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소재들을 책이나 공연,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발표	주1회씩 월4회 (회당40분)	주1회씩 월4회 (회당80분)		▶ 활동내용 중 하나의 스토리북을 선정하여 나만의 책 출판식, 꼬마작가들의 전시회	연 1회 (바우처 결제불가)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집단규모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기본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증상 파악을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총 2종 실시) - 읽기능력검사(자체개발도구) - Rosenberg 자존감척도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1:1 실시 (바우처 결제불가)																			
	* 1 ~ 3 상담일지 별도첨부																				
	1. 이야기 캐기(월 1회) - 책 읽기, 바꿔읽기, 상상하며 읽기 기법 등을 활용한 이야기 소재 발견하기 2. 이야기 굴리기(월 2회) - 연극, 만들기, 그리기 등 매체와 활동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 3. 이야기 쌓기(월 1회) - 이야기 굴리기를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소재들을 책이나 공연,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발표	주1회씩 월4회 (회당40분)	주1회씩 월4회 (회당80분)																		
	▶ 활동내용 중 하나의 스토리북을 선정하여 나만의 책 출판식, 꼬마작가들의 전시회	연 1회 (바우처 결제불가)																			

항 목	내 용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사전검사(총 2종)를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p> <p>② 2단계 : 월별 서비스 제공</p> <p>③ 3단계 : 서비스 종결(사후검사 2종 실시)</p>												
⑦ 서비스 실시역	<p>중구, 동구</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원칙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375 693 1464 900"> <thead> <tr> <th>등록 구</th> <th>규정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중구</td> <td>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제공가능</td> </tr> <tr> <td>동구</td> <td>-추가확보시설 활용 가능하나, 등록 구에 사전 신고 필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사설학원은 서비스 제공장소가 될 수 없음 -추가확보 활용 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 <table border="1" data-bbox="375 957 1464 1529"> <thead> <tr> <th>등록 구</th> <th>등록 구에 따른 조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중구</td> <td>-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td> </tr> <tr> <td>동구</td> <td>-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추가확보시설 활용 시, 다음과 같이 조치</td> </tr> </tbody>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p> <p>▷ 필수 명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 <p>▷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p> <p>▷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p> <p>▷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p> </div> <p>○ 서비스 집단 규모 : 그룹화는 제공기관 편의에 맞추어 실시 (입학시기 등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아동 1:5 이하 - 초등학생 1:8 이하 <p>○ 사전·사후 검사 : 총 2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등록 구	규정사항	중구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제공가능	동구	-추가확보시설 활용 가능하나, 등록 구에 사전 신고 필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사설학원은 서비스 제공장소가 될 수 없음 -추가확보 활용 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	등록 구	등록 구에 따른 조치사항	중구	-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동구	-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추가확보시설 활용 시, 다음과 같이 조치
등록 구	규정사항												
중구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제공가능												
동구	-추가확보시설 활용 가능하나, 등록 구에 사전 신고 필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사설학원은 서비스 제공장소가 될 수 없음 -추가확보 활용 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												
등록 구	등록 구에 따른 조치사항												
중구	-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동구	-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추가확보시설 활용 시, 다음과 같이 조치												

항 목	내 용
⑧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이용아동보호 대책방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22 섬마을 꼬마작가서비스 (사·군·구 공동) / 사업코드 2907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도서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실시하고 문학적 표현, 논리적 언어표현을 통해 정서발달 지원 및 창의성 향상을 도모함.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소득 및 연령</td> <td>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만 3세(2017년생)~만 9세(2011년생) 이하 아동 (*연령 : 2011.01.01.~2017.12.31.)</td> </tr> <tr> <td>★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섬마을 꼬마작가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td> </tr> <tr> <td>유의사항</td> <td>□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만 3세(2017년생)~만 9세(2011년생) 이하 아동 (*연령 : 2011.01.01.~2017.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섬마을 꼬마작가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만 3세(2017년생)~만 9세(2011년생) 이하 아동 (*연령 : 2011.01.01.~2017.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섬마을 꼬마작가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④ 제공기관 및 인력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tr> <td>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r> <td>제공인력 기준</td> <td>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또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한 평생교육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독서지도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아동미술지도사 미술관련(시각디자인, 응용미술, 조형예술)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1개월 이상인 자 <p>※③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또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한 평생교육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독서지도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아동미술지도사 미술관련(시각디자인, 응용미술, 조형예술)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1개월 이상인 자 <p>※③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또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한 평생교육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독서지도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아동미술지도사 미술관련(시각디자인, 응용미술, 조형예술)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1개월 이상인 자 <p>※③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항 목	내 용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5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35,000(90%) 120,000(80%)
		본인부담금	15,000(10%) 30,000(20%)
이용자별 제공기간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33,750원씩 / 2등급:30,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3,750원씩 / 2등급:7,500원씩 산정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증상 파악을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총 2종 실시)		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능력검사(자체개발도구) - Rosenberg 자존감척도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1:1 실시 (비우치 결재불가)
	* 1 ~ 3 상담일지 별도첨부		
	기 본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야기 캐기(월 1회) - 책 읽기, 바꿔읽기, 상상하며 읽기 기법 등을 활용한 이야기 소재 발견하기 2. 이야기 굴리기(월 2회) - 연극, 만들기, 그리기 등 매체와 활동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 3. 이야기 쌓기(월 1회) - 이야기 굴리기를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소재들을 책이나 공연,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발표 	주1회씩 월4회 (회당 40분) ***1:5이하
	▶ 활동내용 중 하나의 스토리북을 선정하여 나만의 책 출판식, 꼬마작가들의 전시회		연 2회 (비우치 결재불가)
⑦ 서비스 실시역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사전검사(총 2종)를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 ② 2단계 : 월별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종결(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후검사 의무 실시-총 2종) 		
	옹진군, 강화군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마다 상이할 수 있음.		

항 목	내 용
<p>⑧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서비스 집단 규모 1:5 이하 (그룹화는 제공기관 편의에 맞추어 실시) ○ 사전·사후 검사 (총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23 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토탈케어서비스(사군구 자체) / 사업코드 1707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육아에 대한 코칭을 통해 긍정적 사고를 돕고 건강한 대처방법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및 양육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②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다음 ①, ②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 임신 7개월 이상인 자 ② 만 2세이상(2018년생)부터 만 12세(2008년생)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아동연령 : 2008.01.01. ~ 2018.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토탈케어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준비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1.임신 7개월 이상인 자 : 산모수첩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⑤-2.만2세이상~만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한부모가정인 경우, 조부모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쌍둥이 포함) 부모(2명)가 각각 이용권을 신청해야 함. ***⑤-1과 ⑤-2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u>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u> 되어야 함.		
	※2019년부터 재가방문+기관방문 혼합형으로 변경 <table border="1"> <tr> <td>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려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려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려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항 목	내 용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p>○ 사전사후검사 및 심리상담 제공인력은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가정학, 아동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부모(양육자) 대상 상담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②가족상담 및 치료 관련 학회에서 수여하는 가족상담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연관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③“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가족상담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연관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육아코칭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베이비시터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육아지도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②“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보육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육아지도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③“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중 한 가지 자격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육아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⑤ 서비스 가격/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p>▶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8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5,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11회기:1,660원씩 / 12회기:1,740원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p>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p>※ 서비스 제공방법 및 서비스 제공 횟수 변경 (2019년 변경)</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종류</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 서비스</td> <td>사전·사후 검사</td> <td>▷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 ▷검사 결과 해석 및 상담 실시 - 양육자의 호소 문제 파악 - 육아코칭서비스에 함께 참여할 자녀에 대한 정보 및 관계 파악 등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연 2회 (회당 90분이상)</td> </tr> <tr> <td>심리상담</td> <td>※ 기관방문형으로 제공 ('19 변경) ▷출산 전·후 우울증 또는 양육스트레스 등 이용자의 호소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작성)</td> <td>격주1회씩 월2회 (회당60분) ***1:1</td> </tr> <tr> <td>육아코칭 서비스</td> <td>※ 재가방문형으로 제공 ('19 변경) ▷자녀의 월령별에 해당하는 육아 방법 안내 및 코칭 ※제공인력 1명과 부모+자녀 1명이 한 팀을 이루어 실시 ※자녀에 대한 단순 돌봄서비스 제공 불가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작성)</td> <td>주1회씩 월4회 (회당60분) ***1:1팀</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 ▷검사 결과 해석 및 상담 실시 - 양육자의 호소 문제 파악 - 육아코칭서비스에 함께 참여할 자녀에 대한 정보 및 관계 파악 등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회당 90분이상)	심리상담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 ('19 변경) ▷출산 전·후 우울증 또는 양육스트레스 등 이용자의 호소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작성)	격주1회씩 월2회 (회당60분) ***1:1	육아코칭 서비스	※ 재가방문형으로 제공 ('19 변경) ▷자녀의 월령별에 해당하는 육아 방법 안내 및 코칭 ※제공인력 1명과 부모+자녀 1명이 한 팀을 이루어 실시 ※자녀에 대한 단순 돌봄서비스 제공 불가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작성)	주1회씩 월4회 (회당60분) ***1:1팀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 ▷검사 결과 해석 및 상담 실시 - 양육자의 호소 문제 파악 - 육아코칭서비스에 함께 참여할 자녀에 대한 정보 및 관계 파악 등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회당 90분이상)													
	심리상담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 ('19 변경) ▷출산 전·후 우울증 또는 양육스트레스 등 이용자의 호소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작성)	격주1회씩 월2회 (회당60분) ***1:1													
	육아코칭 서비스	※ 재가방문형으로 제공 ('19 변경) ▷자녀의 월령별에 해당하는 육아 방법 안내 및 코칭 ※제공인력 1명과 부모+자녀 1명이 한 팀을 이루어 실시 ※자녀에 대한 단순 돌봄서비스 제공 불가 ▶ 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 작성)	주1회씩 월4회 (회당60분) ***1:1팀													

항 목	내 용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사전검사를 통해 이용자의 호소문제 및 자녀에 대한 정보·관계 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p> <p>② 2단계: 심리상담서비스와 육아코칭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p> <p>③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사후검사 실시</p>
⑦ 서비스 실시역	<p>미추홀구</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제공형태 : 재가방문형(육아코칭)+기관방문형(심리상담)</p> <p>○ 서비스 집단 규모 : 부모+영아 1팀</p> <p>※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쌍둥이 포함) 부모(2명)가 각각 이용권을 신청해야 함.</p> <p>※ 한부모가정인 경우, 조부모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p> <p>○ 사전·사후 검사 : 양육스트레스검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p>○ 양육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녀 1명이 한 팀을 이루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했던 자녀가 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참여해야 함.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기타 전달사항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 기록지와 함께 보관 <p>○ 결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p>○ 보강 실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u> 할 수 없음.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p>

항 목	내 용
	<p>(연 2회이상)</p> <p>○ 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p>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p>○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 <p>○ 제공기관 등록 시 심리상담, 육아코칭서비스 각각에 대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24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시·군·구 자체) / 사업코드 2103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사회성발달이 지연된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 그룹활동을 통해 사회성기술과 사회적 감정기술을 향상시켜 사회성을 증진하고 사회적일반화를 할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2 468 479 530">소득</td> <td data-bbox="479 468 1440 530">기준중위소득 140% 이하</td> </tr> <tr> <td data-bbox="332 530 479 606">연령</td> <td data-bbox="479 530 1440 606">만 5세(2015년생) 이상 ~ 만 8세(2012년생) 이하 아동 (*연령:2012.01.01. ~ 2015.12.31.)</td> </tr> <tr> <td data-bbox="332 606 479 1065">선정기준</td> <td data-bbox="479 606 1440 1065">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발달장애) 소지자(의사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증빙)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추가)로부터 발달검사·사회성검사를 받아 사회성 발달지연 소견을 받은 아동 ③ 다음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회성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td> </tr> <tr> <td data-bbox="332 1065 479 1212">★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data-bbox="479 1065 1440 1212">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td> </tr> <tr> <td data-bbox="332 1212 479 1288">중복제한</td> <td data-bbox="479 1212 1440 1288">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참좋은카드,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td> </tr> <tr> <td data-bbox="332 1288 479 1517">유의사항</td> <td data-bbox="479 1288 1440 1517"> <input type="checkbox"/> “자격기본법”에 의한 ‘방과후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에 유의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영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5세(2015년생) 이상 ~ 만 8세(2012년생) 이하 아동 (*연령:2012.01.01. ~ 2015.12.31.)	선정기준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발달장애) 소지자(의사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증빙)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추가)로부터 발달검사·사회성검사를 받아 사회성 발달지연 소견을 받은 아동 ③ 다음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회성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참좋은카드,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자격기본법”에 의한 ‘방과후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에 유의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영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5세(2015년생) 이상 ~ 만 8세(2012년생) 이하 아동 (*연령:2012.01.01. ~ 2015.12.31.)												
선정기준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발달장애) 소지자(의사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증빙)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추가)로부터 발달검사·사회성검사를 받아 사회성 발달지연 소견을 받은 아동 ③ 다음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회성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참좋은카드,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자격기본법”에 의한 ‘방과후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에 유의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영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⑤-1. ‘선정기준①’과 관련하여 다음 중 택1하여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 진단서(발달장애) -장애인등록증(발달장애) ⑤-2. ‘선정기준②’와 관련하여 다음 중 택1하여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추가) 소견서(사회성발달 지연)와 자격증 사본												

항 목	내 용														
	<p>⑤-3. '선정기준③'과 관련하여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추천서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⑤-1, ⑤-2, ⑤-3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 ※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2019년 변경)</p>														
<p>④ 제공기관 및 인력</p>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45 677 1429 936"> <tr> <td data-bbox="345 677 519 936">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td> <td data-bbox="519 677 1429 936">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 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45 959 1429 1556"> <tr> <td data-bbox="345 959 519 1556"> <p>제공인력 기준 (세 가지 충족)</p> </td> <td data-bbox="519 959 1429 1556"> <p>○ 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제공인력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추가)</p> <p>○ 사회성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제공인력 : 다음 ①,②에 해당하는 제공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함 (선택X)</p> <p>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언어재활(심리 또는 상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② 특수체육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인면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운동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심리운동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경력은 자격 및 학위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td> </tr> </table>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 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p>제공인력 기준 (세 가지 충족)</p>	<p>○ 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제공인력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추가)</p> <p>○ 사회성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제공인력 : 다음 ①,②에 해당하는 제공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함 (선택X)</p> <p>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언어재활(심리 또는 상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② 특수체육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인면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운동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심리운동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경력은 자격 및 학위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 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p>제공인력 기준 (세 가지 충족)</p>	<p>○ 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제공인력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추가)</p> <p>○ 사회성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제공인력 : 다음 ①,②에 해당하는 제공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함 (선택X)</p> <p>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언어재활(심리 또는 상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② 특수체육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인면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운동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심리운동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경력은 자격 및 학위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www.pqi.or.kr 에서 조회바람</p>														
<p>⑤ 서비스 가격/제공기간</p>	<p>▶ 월 16만원 (정부지원 70~90% / 본인부담 10~30%)</p> <table border="1" data-bbox="500 1632 1437 1820"> <thead> <tr> <th data-bbox="500 1632 625 1724">구분</th> <th data-bbox="625 1632 862 1724">(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 data-bbox="862 1632 1198 1724">(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h data-bbox="1198 1632 1437 1724">(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00 1724 625 1770">정부지원금</td> <td data-bbox="625 1724 862 1770">144,000원(90%)</td> <td data-bbox="862 1724 1198 1770">128,000원(80%)</td> <td data-bbox="1198 1724 1437 1770">112,000원(70%)</td> </tr> <tr> <td data-bbox="500 1770 625 1820">본인부담금</td> <td data-bbox="625 1770 862 1820">16,000원(10%)</td> <td data-bbox="862 1770 1198 1820">32,000원(20%)</td> <td data-bbox="1198 1770 1437 1820">48,000원(3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36,000원씩 / 2등급:32,000원씩 / 3등급:28,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4,000원씩 / 2등급:8,000원씩 / 3등급:12,000원씩 산정</p> <table border="1" data-bbox="345 1976 1437 2052"> <tr> <td data-bbox="345 1976 479 2052">이용자별 제공기간</td> <td data-bbox="479 1976 1437 2052">12개월</td> </tr> </table>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항 목	내 용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2 381 462 415">구분</th> <th data-bbox="462 381 1214 415">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14 381 1440 41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2 415 462 534">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462 415 1214 534"> ▷ 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 사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별도첨부 </td> <td data-bbox="1214 415 1440 534">연 2회 (회당 60분이상) ***1:1실시</td> </tr> <tr> <td data-bbox="332 534 462 679">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462 534 1214 679"> ▷ 사회성프로그램 · 사회성 규칙, 행동조절, 사회성증진 관련 집단 프로그램 제공 * 사회성프로그램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필수 </td> <td data-bbox="1214 534 1440 679">주 1회씩 월 4회 (회당60분) ***1:4이하</td> </tr> <tr> <td data-bbox="332 679 462 838">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462 679 1214 838"> ▷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 부모 대상 집단교육 실시(실시방법 자율) · 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부모상담 병행 가능(필요시) *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필수 </td> <td data-bbox="1214 679 1440 838">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 사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별도첨부	연 2회 (회당 60분이상) ***1:1실시	기본 서비스	▷ 사회성프로그램 · 사회성 규칙, 행동조절, 사회성증진 관련 집단 프로그램 제공 * 사회성프로그램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필수	주 1회씩 월 4회 (회당60분) ***1:4이하	기본 서비스	▷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 부모 대상 집단교육 실시(실시방법 자율) · 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부모상담 병행 가능(필요시) *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필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 사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별도첨부	연 2회 (회당 60분이상) ***1:1실시										
기본 서비스	▷ 사회성프로그램 · 사회성 규칙, 행동조절, 사회성증진 관련 집단 프로그램 제공 * 사회성프로그램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필수	주 1회씩 월 4회 (회당60분) ***1:4이하										
기본 서비스	▷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 부모 대상 집단교육 실시(실시방법 자율) · 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부모상담 병행 가능(필요시) *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필수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⑦ 서비스 실시역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사전검사 ② 2단계 : 사회성 증진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이용만족도조사 실시, 사후검사 부평구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 서비스 집단규모는 1:4 이하 - 제공인력 1명 당 이용자 최대 4명까지 제공가능 ○ 사전·사후 검사(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 1:1 실시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 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2회기 중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2회기 중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사회성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상담 모두 상담일지 별도 작성)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u> 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25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프로그램(시·군·구 자체) / 사업코드 2104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룹형 사회성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소득</td> <td>기준중위소득 140% 이하</td> </tr> <tr> <td>연령</td> <td>만 18세(2002년생) 이상 (*연령 : ~2002.12.31.)</td> </tr> <tr> <td>선정기준</td> <td>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발달장애인을 뜻함.</td> </tr> <tr> <td>★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프로그램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td> </tr> <tr> <td>유의사항</td> <td>□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18세(2002년생) 이상 (*연령 : ~2002.12.31.)	선정기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발달장애인을 뜻함.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프로그램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18세(2002년생) 이상 (*연령 : ~2002.12.31.)									
	선정기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발달장애인을 뜻함.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프로그램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부터) ⑤장애인등록증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 되어야 함.										
	<table border="1"> <tr> <td>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td> </tr> <tr> <td>제공인력 기준</td> <td>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관련 학사이상 전공자로서 다음 경력 중 한 가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취득 이후 발달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학위취득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발달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관련 학사이상 전공자로서 다음 경력 중 한 가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취득 이후 발달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학위취득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발달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제공인력 기준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관련 학사이상 전공자로서 다음 경력 중 한 가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취득 이후 발달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학위취득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발달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항 목	내 용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p>▶ 월 20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data-bbox="552 390 1453 539">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th> <th>(2등급)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80,000원(90%)</td> <td>160,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000원(10%)</td> <td>40,000원(2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45,000원씩 / 2등급:40,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5,000원씩 / 2등급:10,000원씩 산정</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81 769 1453 1251">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서비스</td> <td>1. 사전사후검사 : 총 2종 실시 - 발달 및 사회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성숙도 검사, 그림검사, 사회성기술검사 등 선택하여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연 2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1</td> </tr> <tr> <td>2. 집단 사회성프로그램 실시 - 미술, 음악 심리재활 등을 통한 사회성프로그램 제공 - 문제행동 조절능력과 자기의사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 증진 도모 ➔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주 1회씩 월 4회 (회당 120분) *집단규모 1:4이하</td> </tr> <tr> <td>3. 보호자 상담 및 가족상담 실시(요청 시)</td> <td>요청 시 (회당 60분)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검사 2종 의무 실시) ②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또는 혼합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사후검사 2종 의무 실시)</p>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검사 : 총 2종 실시 - 발달 및 사회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성숙도 검사, 그림검사, 사회성기술검사 등 선택하여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1	2. 집단 사회성프로그램 실시 - 미술, 음악 심리재활 등을 통한 사회성프로그램 제공 - 문제행동 조절능력과 자기의사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 증진 도모 ➔ 상담일지 별도첨부	주 1회씩 월 4회 (회당 120분) *집단규모 1:4이하	3. 보호자 상담 및 가족상담 실시(요청 시)	요청 시 (회당 60분) (바우처 결제불가)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검사 : 총 2종 실시 - 발달 및 사회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성숙도 검사, 그림검사, 사회성기술검사 등 선택하여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1											
	2. 집단 사회성프로그램 실시 - 미술, 음악 심리재활 등을 통한 사회성프로그램 제공 - 문제행동 조절능력과 자기의사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 증진 도모 ➔ 상담일지 별도첨부	주 1회씩 월 4회 (회당 120분) *집단규모 1:4이하											
	3. 보호자 상담 및 가족상담 실시(요청 시)	요청 시 (회당 60분) (바우처 결제불가)											
⑦ 서비스 실시역	<p>남동구</p> <p>※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p> <p>○ 서비스 집단규모 1: 4 이하(단, 사전사후검사는 1:1로 실시)</p> <p>○ 사전·사후 검사 : 2종 이상 실시(사회성숙도 검사, 그림검사, 사회성기술검사 등 선택)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보호자 전달사항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 기록지와 함께 보관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26 어르신 관절건강지킴 프로그램 (시·군·구 자체) / 사업코드 2004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노인성 관절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체력향상 도모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5 466 516 530">소득</td> <td data-bbox="516 466 1455 530">기준중위소득 140% 이하</td> </tr> <tr> <td data-bbox="375 530 516 840">연령 및 선정기준</td> <td data-bbox="516 530 1455 840"> 다음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만65세(1955년생) 이상인 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연령 : ~1955.12.31.) ★②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 ☞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td> </tr> <tr> <td data-bbox="375 840 516 982">★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data-bbox="516 840 1455 982">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어르신 관절건강지킴 프로그램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td> </tr> <tr> <td data-bbox="375 982 516 1028">중복제한</td> <td data-bbox="516 982 1455 1028">노인수중운동교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td> </tr> <tr> <td data-bbox="375 1028 516 1143">유의사항</td> <td data-bbox="516 1028 1455 1143">□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다음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만65세(1955년생) 이상인 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연령 : ~1955.12.31.) ★②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 ☞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어르신 관절건강지킴 프로그램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노인수중운동교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다음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만65세(1955년생) 이상인 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연령 : ~1955.12.31.) ★②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 ☞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어르신 관절건강지킴 프로그램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노인수중운동교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우선 선정]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 → 2020년 추가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 되어야 함.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5 1556 565 2054">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65 1556 1482 2054">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거나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69.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69.3㎡이상이어야 함.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거나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69.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69.3㎡이상이어야 함.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거나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69.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69.3㎡이상이어야 함. -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항 목	내 용									
	제공인력 기준 (모두 총족)	<p>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자격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노인대상 태권도 제공경력이 1년이상인 자 ***태권도 이외의 자격종목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의 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태권도) 자격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노인대상 태권도 제공경력이 1년이상인 자 ***태권도 이외의 자격종목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③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노인 대상 태권도 지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경력은 자격 및 학위 취득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⑤ 서비스 가격/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p>▶ 월 12만원 [정부지원금] 108,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9,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000원씩 산정</p>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이용자별 제공기간	<p>12개월</p>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81 1281 1463 1643">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서비스</td> <td>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분기 1회 (회당 60분)</td> </tr> <tr> <td>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맨손 또는 기구를 활용한 관절건강 기능향상 운동프로그램 제공</td> <td>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td> </tr> </tbody> </table> <p>※ 1회 90분 내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p>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이용자의 욕구파악 ② 2단계 : 기초체력 및 체성분검사 실시 및 상담 (사전검사 실시)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⑤ 5단계 : 사후관리 (사후검사 실시)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기 1회 (회당 60분)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맨손 또는 기구를 활용한 관절건강 기능향상 운동프로그램 제공	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기 1회 (회당 60분)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맨손 또는 기구를 활용한 관절건강 기능향상 운동프로그램 제공	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								
⑦ 서비스 실시역	계양구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항 목	내 용
<p>⑧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서비스 집단규모 1: 20 이하 ○ 사전·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u>분기별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점검 기록내용, 검사결과지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u>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보상)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 20년 8월 신규 시행사업**

27 필이 통하는 놀이혁신으로 아동의 행복찾기 [사군구 자체 / 사업코드 290805]

항 목	내 용		
① 목 적	경력단절 여성의 참여를 통해 양성된 지역내 놀이지도활동가 인력을 활용하여 놀이혁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 보장		
②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17 534 561 656">소득 및 연령</td> <td data-bbox="561 534 1438 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만 6세 이상(2014년생)~만 12세(2008년생) 이하 (*연령:2008.01.01.~2014.12.31.) </td> </tr> </table>	소득 및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만 6세 이상(2014년생)~만 12세(2008년생) 이하 (*연령:2008.01.01.~2014.12.31.)
	소득 및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만 6세 이상(2014년생)~만 12세(2008년생) 이하 (*연령:2008.01.01.~2014.12.31.) 	
	우선 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부적응 등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⑥[우선 선정]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 ⑥-1.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비스 연계 요청공문(1순위에 해당)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	---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p>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6.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36.3㎡이상이어야 함. -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항 목	내 용											
	제공인력 기준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숲밧줄전래놀이전문가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p>▶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8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p> <p>▶ 회차별 금액 : 유형별 제공횟수가 상이하므로 유의</p> <table border="1" data-bbox="560 734 1446 872"> <tr> <td data-bbox="560 734 998 872"> 유형1 학교연계형(월 8회)의 경우, [정부지원금] 22,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2,500원씩 산정 </td> <td data-bbox="998 734 1446 872"> 유형2 지역연계형(월 4회)의 경우, [정부지원금] 45,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5,000원씩 산정 </td> </tr> </table> <p>이용자별 제공기간 4개월 (20. 8. 1. ~ 11. 30.)</p>	유형1 학교연계형(월 8회)의 경우, [정부지원금] 22,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2,500원씩 산정	유형2 지역연계형(월 4회)의 경우, [정부지원금] 45,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5,000원씩 산정								
유형1 학교연계형(월 8회)의 경우, [정부지원금] 22,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2,500원씩 산정	유형2 지역연계형(월 4회)의 경우, [정부지원금] 45,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5,000원씩 산정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410 1021 1446 1412"> <thead> <tr> <th data-bbox="410 1021 560 1067">구 분</th> <th data-bbox="560 1021 1242 1067">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42 1021 1446 1067">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0 1067 560 1412" rowspan="3"> 기본 서비스 </td> <td data-bbox="560 1067 1242 1159"> ▷사전사후검사 : 자아존중감 검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td> <td data-bbox="1242 1067 1446 1159">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td> </tr> <tr> <td data-bbox="560 1159 1242 1297"> [유형1] 학교연계형 ▷전래전통놀이활동 </td> <td data-bbox="1242 1159 1446 1297"> 주 2회 (회당 50분) * 1:10이하 </td> </tr> <tr> <td data-bbox="560 1297 1242 1412"> [유형2] 지역연계형 ▷숲놀이활동 </td> <td data-bbox="1242 1297 1446 1412"> 주 1회 (회당 100분) * 1:10이하 </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사전검사 실시 ② 2단계 : 유형1, 유형2 중 선택하여 제공 ③ 3단계 : 사후검사를 통한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 자아존중감 검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유형1] 학교연계형 ▷전래전통놀이활동	주 2회 (회당 50분) * 1:10이하	[유형2] 지역연계형 ▷숲놀이활동	주 1회 (회당 100분) * 1:10이하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 자아존중감 검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유형1] 학교연계형 ▷전래전통놀이활동	주 2회 (회당 50분) * 1:10이하										
	[유형2] 지역연계형 ▷숲놀이활동	주 1회 (회당 100분) * 1:10이하										
⑦ 서비스 실시지역	동구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형태 : 집단활동형으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 ○ 서비스 집단규모 1:10 이하 ○ 사전·사후 검사(자아존중감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일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일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제공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 -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 ○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 업무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
<p>⑨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보상) -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p> <p>▷필수 명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 <p>▷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p> <p>▷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p> <p>▷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⑥서비스내용 및 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

제3장 참고자료

- Ⅰ.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 Ⅱ.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 Ⅲ.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I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2020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임

※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2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09,000	70,702	29,273	-
2인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45,000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000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6인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7인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8인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9인	10,988,000	368,580	393,349	402,261
10인	12,048,000	402,261	426,790	437,059

3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60,000	82,471	50,929	-
2인	4,189,000	140,649	136,471	142,519
3인	5,419,000	183,101	188,153	185,993
4인	6,649,000	224,298	238,415	228,710
5인	7,879,000	268,311	289,976	276,843
6인	9,109,000	311,116	333,411	326,561
7인	10,346,000	368,580	393,349	402,261
8인	11,582,000	402,261	426,790	437,059
9인	12,819,000	437,059	462,265	471,545
10인	14,056,000	471,545	495,914	519,517

II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2020. 1. 기준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만 1 세	2019년생	만 36세	1984년생	만 71세	1949년생
만 2 세	2018년생	만 37세	1983년생	만 72세	1948년생
만 3 세	2017년생	만 38세	1982년생	만 73세	1947년생
만 4 세	2016년생	만 39세	1981년생	만 74세	1946년생
만 5 세	2015년생	만 40세	1980년생	만 75세	1945년생
만 6 세	2014년생	만 41세	1979년생	만 76세	1944년생
만 7 세	2013년생	만 42세	1978년생	만 77세	1943년생
만 8 세	2012년생	만 43세	1977년생	만 78세	1942년생
만 9 세	2011년생	만 44세	1976년생	만 79세	1941년생
만 10세	2010년생	만 45세	1975년생	만 80세	1940년생
만 11세	2009년생	만 46세	1974년생	만 81세	1939년생
만 12세	2008년생	만 47세	1973년생	만 82세	1938년생
만 13세	2007년생	만 48세	1972년생	만 83세	1937년생
만 14세	2006년생	만 49세	1971년생	만 84세	1936년생
만 15세	2005년생	만 50세	1970년생	만 85세	1935년생
만 16세	2004년생	만 51세	1969년생	만 86세	1934년생
만 17세	2003년생	만 52세	1968년생	만 87세	1933년생
만 18세	2002년생	만 53세	1967년생	만 88세	1932년생
만 19세	2001년생	만 54세	1966년생	만 89세	1931년생
만 20세	2000년생	만 55세	1965년생	만 90세	1930년생
만 21세	1999년생	만 56세	1964년생	만 91세	1929년생
만 22세	1998년생	만 57세	1963년생	만 92세	1928년생
만 23세	1997년생	만 58세	1962년생	만 93세	1927년생
만 24세	1996년생	만 59세	1961년생	만 94세	1926년생
만 25세	1995년생	만 60세	1960년생	만 95세	1925년생
만 26세	1994년생	만 61세	1959년생	만 96세	1924년생
만 27세	1993년생	만 62세	1958년생	만 97세	1923년생
만 28세	1992년생	만 63세	1957년생	만 98세	1922년생
만 29세	1991년생	만 64세	1956년생	만 99세	1921년생
만 30세	1990년생	만 65세	1955년생	만 100세	1920년생
만 31세	1989년생	만 66세	1954년생	만 101세	1919년생
만 32세	1988년생	만 67세	1953년생	만 102세	1918년생
만 33세	1987년생	만 68세	1952년생	만 103세	1917년생
만 34세	1986년생	만 69세	1951년생	만 104세	1916년생
만 35세	1985년생	만 70세	1950년생	만 105세	1915년생

※ 상기 기준은 사업 종류가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른 복지 사업 및 사회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